

碩士學位請求論文

# 學生非行에 대한 學校의 懲戒 現況 分析

-濟州道 中等學校를 中心으로-

指導教授 梁 鎭 健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行政專攻

金 張 永

2000年 8月

# 學生非行에 대한 學校의 懲戒 現況 分析

-濟州道 中等學校를 中心으로-

指導教授 梁 鎮 健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0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行政專攻



세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提出者 金 張 永

金張永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0年 7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抄錄>

學生非行에 대한 學校의 懲戒 現況 分析  
-濟州道 中等學校를 中心으로-

金 張 永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行政專攻  
指導教授 梁 鎮 健

학생비행에 대한 학교의 징계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학교 또는 교사들이 익히 사용했던 학생징계에 대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학생비행의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 2) 학생징계의 유형을 알아보고자 한다.
- 3) 학생징계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4) 학생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밝히고자 제주도내 중학교 39개교, 고등학교 28개교 학생부 담당 교사 402명을 대상으로 하여 비행과 징계에 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비행은 학교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피해 장소는 교실, 화장실, 운동장, 매점, 건물 뒤편 등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며, 가해 상대방도 같은 학교 학생으로 평범한 학생인 경우가 많았다.

---

\* 본 논문은 2000년 7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둘째. 제주도내 학생비행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행위는 폭력이며, 다음으로 금품갈취, 흡연, 절도, 음주, 가출, 유해업소 출입, 따돌림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많은 피해를 경험하고 있어 중학교에서의 학교 비행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주목해야할 것이다.

셋째. 징계의 유형은 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문제 행동의 정도에 따라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퇴학처분을 하고 있으나 징계기준표가 학교마다 달라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었다.

넷째. 제주도내 중등학교의 징계처분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징계는 학교내의 봉사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회봉사, 특별교육, 퇴학처분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회봉사와 특별교육이수 징계 운영은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인데도, 실업계고등학교에서는 대체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는 반면 중학교 및 인문계고등학교에서는 거의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학교비행이 발생했을 때 일선학교나 교사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해결방법을 활용하는가에 대해 다양한 전략이 가능하리라 믿었으나 놀랍게도 학생징계가 일반적인 해결전략으로 차용되고 있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학교에서 하는 학생 선도는 주로 징계에 치우쳐져 있다.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지도 및 학습지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대해 징계하는 것이 교내 선도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징계 그 자체가 선도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징계를 경험한 학생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고, 다시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북돋우는데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때, 문제행동을 근절하기 위해 쏟아야 하는 노력은 더 말할 나위 없이 폭넓은 인내심으로 경주되지 않으면 안 된다.

# 目 次

<抄錄> .....	i
<b>I. 緒 論</b> .....	1
1. 研究의 必要性 .....	1
2. 研究의 目的 .....	2
3. 研究問題 .....	4
4. 用語의 定義 .....	4
5. 研究의 制限點 .....	5
<b>II. 理論的背景</b> .....	6
1. 學生非行과 漸増化 傾向 .....	6
2. 學生懲戒의 選擇 .....	13
3. 學生懲戒의 構造 .....	16
<b>III. 研究의 方法</b> .....	28
1. 研究對象 .....	28
2. 測定道具 .....	30
3. 資料處理 方法 .....	30
<b>IV. 結果 및 解釋</b> .....	31
1. 學生懲戒의 檢證 .....	31
<b>VII. 要約 및 結論</b> .....	61
1. 要約 .....	61
2. 結論 .....	63
參 考 文 獻 .....	66
<Abstract> .....	70
<附錄> .....	73

# 表 目 次

<표 1> 학생범죄의 연도별 현황 .....	8
<표 2> 학생범죄의 동기별 현황 .....	9
<표 3> 학생범죄의 유형별 현황 .....	9
<표 4> 학생들의 주요 폭력 피해를 .....	10
<표 5> 제주도 학생폭력 실태 .....	10
<표 6> 제주도 중·고등학교 비행학생 현황 .....	11
<표 7> 설문지 회수 현황 .....	29
<표 8> 학교별 회수 현황 .....	29
<표 9> 설립별 회수 현황 .....	29
<표 10> 징계처분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행위 .....	39
<표 11> 비행이 발생하는 장소의 비율 .....	42
<표 12> 학교별 학교 밖에서 발생한 비행에 대한 처벌 .....	43
<표 13> 남녀별 학교 밖에서 발생한 비행에 대한 처벌 .....	45
<표 14> 학생징계 공고의 대상 .....	46
<표 15> 징계규정보다 가중하여 처분을 하는 경우 .....	49
<표 16> 비행 학생을 발견했거나 인지한 경우 .....	51
<표 17> 징계규정보다 경감하여 처분을 결정하는 경우 .....	54
<표 18> 징계규정보다 경감하여 처분을 결정하는 경우 .....	55
<표 19> 비행학생에 대한 특별지도 프로그램준비 .....	59
<표 20> 비행학생에 대한 특별지도 프로그램준비 .....	60

# I. 緒 論

## 1. 研究의 必要性

최근 학생문제는 매우 다양하고 심각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생 비행은 많은 학생들과 가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전세계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여러 나라 가운데 미국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실정으로 미국의 청소년 인구가 전 인구의 10% 정도 인데 반해 청소년 폭력범죄에 의해 희생되는 청소년의 수는 무려 25%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984년에서 1993년 사이 살인으로 체포된 청소년의 수는 무려 168%, 흉기를 사용한 폭력사건은 128%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sup>1)</sup>

학생비행은 학생 개인뿐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문제이며,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처방안 또한 통합적 시각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이다. 학생비행은 학교 주변의 폭력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학생비행은 또한 사회의 폭력문화와도 깊게 연결된다. 더욱이 학교 및 학교주변에서 발생하는 학생비행문제는 비행의 심각성은 물론 비행의 피해자 및 가해자 모두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다른 무엇보다 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따라서 학생비행의 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는 매우 필요하고도 절실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경우 학생비행이 발생했을 때 학교가 취하는 대표적인 해결방법으로 학생징계라는 연구<sup>2)</sup>는 시사하는

---

1) Children's Defense Fund, The state of America's children yearbook, Washington, DC : Author, 1995.p.129.

2) 권오철, "고등학교 학생징계에 관한 연구",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1981.

바가 매우 크다. 일반적으로 징계란 특별권력관계나 특별감독관계 또는 특별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일정한 제재 또는 책임을 부과하거나 책임을 묻는 행위를 말하는데 학생비행의 해결전략으로 학생징계가 우선 선택된다는 말은 일단 학생비행의 가해자를 특별권력관계나 특별감독관계 또는 특별신분관계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일정한 제재 또는 책임을 부과하거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인식한다는 말이다.

학생징계는 매년 양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학생비행의 증가세와 비례하고 있다. 왜 일선 학교들은 학생비행의 해결방법으로 학생징계를 선호하는 것일까? 학생비행의 정도가 학생징계 외에는 다른 방법을 허락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 특히 학생징계는 학생의 교육받을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직접적 불이익인 수업정지와 간접적 불이익인 낙인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이중의 불이익을 낳는다는 사실을 유념할 때 선택하기가 용이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학생비행이 발생했을 때 학교가 취하는 대표적인 해결방법인 학생징계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접근하기 위해 학생비행의 실태와 특징을 검토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하는 학생징계라는 것을 교사 또는 학교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생체벌이나 학생생활지도에 비해 왜 학생징계에 더 많이 의존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 2. 研究의 目的

배움의 장소인 학교에서 비행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비행은 교육에 관한 주요 토론의제에서조차 빠지곤 한다.



본 연구는 학교와 학교주변 비행의 현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러한 학생비행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 학교 또는 교사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는 해결방법인 학생징계에 대한 논의의 장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징계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각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학생 징계는 법적으로 학교장의 '교육적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sup>3)</sup> 파악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각 학교에서 학생 징계권은 학교장의 권한으로 존중되고 있다.

학생비행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일선 학교의 대처 양식은 어떠한가. 다시 말해 학생비행이 발생했을 때 일선 학교나 교사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해결방법을 활용하는가. 이에 대해 다양한 전략이 가능하리라 믿었으나 놀랍게도 학생징계가 일반적인 해결전략으로 차용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계의 솔직한 현실<sup>4)</sup>이었다. 학생비행에 대한 대처 양식이 오로지 학생징계뿐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구태여 해결전략이라고 할 필요가 없겠지만, 현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 강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해결전략이라는 개념을 쓰고자 한다.

학생비행에 대한 대처 양식으로서 학생징계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를 통해 해명이 되어야 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단 학생비행의 대처 방안으로 학생징계라는 방법을 인정하고 과연 학생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해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끝으로 학생징계가 과연 학생비행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

3) 교육부, 『대법원 교육판례집』, 1993, p.35.

4) 겨울방학(2000년 1월과 2월)을 빌어 본 연구자가 직접 50여명 정도의 도내 중등학교 학생부 교사들과 실제 면담 결과 학생비행이 발생했을 때 80% 이상이 학생징계라는 해결전략을 선택했고, 70% 이상의 교사들이 학생징계라는 방법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믿고 있었다.

### 3. 研究의 問題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학생비행이 발생했을 때 학교가 취하는 대표적인 해결방법인 학생징계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접근하기 위해 학생비행의 실태와 특징을 검토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하는 학생징계라는 것을 교사 또는 학교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생체벌이나 학생생활지도에 비해 왜 학생징계에 더 많이 의존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 연구하고자 한다.

- 1) 학생비행의 실태를 알아보려고 한다.
- 2) 학생징계의 유형을 알아보려고 한다.
- 3) 학생징계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 4) 학생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4. 用語의 定義

1) 학생비행 : 가해자나 피해자 또는 발생장소 등에 있어 학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폭력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그 주체나 대상이 모두 청소년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여기서 말하는 폭력행위란 강제력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여러 유형의 범죄로서 살인, 강도, 강간,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 유인하는 행위 등을 지칭한다.

2) 학생징계 : 학생의 교육받을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자면 징계의 종류로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처분이 있다.

## 5. 研究의 制限點

1)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내 중등학교 학생부 교사들로 하였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타당도가 검증된 검사지가 아니고, 현장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 II. 理論的背景

### 1. 學生非行과 漸増化 傾向

#### 1) 학생비행의 정의

학생비행이란 가해자나 피해자 또는 발생 장소 등에 있어 학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폭력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그 주체나 대상이 모두 청소년이라는 점이 특징이다.<sup>5)</sup> 여기서 말하는 폭력행위란 강제력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여러 유형의 범죄로서 살인, 강도, 강간,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 유인하는 행위 등을 지칭한다.

사실 학교 안이나 주변에서 학생들간에 싸움을 하거나, 학교 주변 불량배들이 학생들을 괴롭히는 것은 매우 오래된 현상이다. 그러나 최근 학생비행 사례가 대중매체에 의해 집중 보도되면서, 오늘날의 학교는 마치 “혼란과 폭력의 장” 처럼 극화된 모습으로 묘사되는 감마저 없지 않다.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이라는 캠페인이 이러한 상황을 가장 회화적으로 표현해준다.

한편 정부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자극을 받아 대통령이 직접 관계부처에 학교 비행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촉구하기에 이르렀으며, 교육부, 법무부, 내무부,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및 공보처 등에서 나름대로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있다.<sup>6)</sup>

5) 강세현, “선택적 낙인과정과 비행에 관한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4.

6) 학교폭력이 날로 흉포화 하자, 정부는 <검사 및 경찰관의 학교담당제>, <우범 불량학생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의 도입>, <학교폭력신고센터 설치>, <청소년보호특별법 제정추진> 등 각종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당국의 단속활동도 강

이와 같은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나 사회단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책을 보면 정확한 실태에 기반한 현실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선언적인 당위론에 입각한 것이 많다. 이를테면 상습폭력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명령제’ 적용이나, ‘우범학생 명단통보와 특별관리’와 같은 방안도 제기되었으나, 이는 인권침해시비, 예비검속 등 입법론상 중대한 문제가 있으며, 비행청소년의 선도와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도 배치된다.

## 2) 학생비행의 실태

학생비행의 전반적인 실태에 대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sup>7)</sup>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시사적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학생들의 피해율을 통해서 학생비행의 실태를 살펴보았는데 우선 피해를 추정함에 있어, 비행유형을

① 위협 및 협박과 같은 ‘언어적 폭력,’

② 따귀 때리기 등을 비롯한 ‘신체적 폭행,’ 그리고

③ 심리적 및 신체적 폭력을 수반한 ‘금품갈취,’

④ 하기 싫은 일을 강제로 시키는 ‘괴롭힘’

⑤ 약물오남용

⑥ 흡연·음주

⑦ 절도 등으로 나누고,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경험을 함께 살펴보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 기간은 1998년 6월 -1999년 5월 사이로 학

---

화되었고, 통학로 주변에 정·사복경관배치, 1996년 6월 3일 경찰, 교육, 지방행정기관, 민간단체로 이뤄진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가 발족하였다. 본청 이외에 서울 시내 30개 경찰서에서도 교내 학생 선도반과 교외폭력단속반, 유해환경 단속반을 구성하여, 교내 폭력서클, 학원 과 독서실 주변폭력,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 유해업소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소식』, 제39호, 1999.

교주변에서 누군가(학교친구, 선배, 아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 등)로부터 폭력을 당해 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전체 표본 (1,919명)의 57%(1,095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는 여자보다 남자의 피해율이 2배 가량 높고, 학교유형별로는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의 피해경험이 더 높다. 특히 남자 중학생들의 피해율이 두드러져 약 75% 이상이 피해경험을 보고하였다.

<표 1> 학생범죄의 연도별현황

(단위 : 명, %)

연도	전체범죄(A)	소년범죄		학생범죄	
		인원(B)	구성비(B/A)	인원(C)	구성비(C/B)
1994	1,660,973 (100)	108,342 (100)	6.5	69,611 (100)	64.3
1995	1,804,405 (108.6)	124,244 (114.7)	6.9	82,442 (118.4)	66.4
1996	2,018,296 (121.5)	146,986 (135.7)	7.3	91,750 (131.8)	62.4
1997	2,117,759 (127.5)	164,182 (151.5)	7.8	103,292 (148.4)	62.9
1998	2,341,431 (141.0)	161,277 (148.9)	6.9	99,625 (143.1)	61.8

자료 : 대검찰청

<표 2> 학생범죄의 동기별 현황

(단위 : 명)

연 도		1994	1995	1996	1997	1998
계		69,611	82,442	91,750	103,292	99,625
이유	소 계	11,628	13,172	16,247	13,346	13,200
	생활비	708	617	671	658	707
	유 흥 비	5,809	5,169	6,611	4,886	4,323
	허영사치심	1,045	1,126	1,324	775	598
	기 타	4,786	6,260	7,641	7,027	7,572
사행심		655	662	678	711	557
원한분노		1,013	897	933	1,576	1,085
취중(호기심)		6,565	8,263	9,638	10,486	8,776
가정불화		76	85	65	57	59
유혹		725	775	852	1,150	1,305
우발적		17,400	20,911	21,935	25,821	26,729
현실불만		795	816	1,328	1,825	1,175
부주의		10,540	13,769	15,038	18,203	16,717
기 타		20,214	23,092	25,036	30,117	30,022

주 이육란의 기타는 도박비 마련, 치부와 그 외 이육목적 범행임. 자료 : 대검찰청

<표 3> 학생범죄의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

연도	계	폭력범		절도범		강력범		기타	
	인원	인원	점유율	인원	점유율	인원	점유율	인원	점유율
1994	69,611	25,143	36.1	17,307	24.9	1,730	2.5	25,431	36.5
1995	82,442	31,491	38.2	18,552	22.5	2,140	2.6	30,259	36.7
1996	91,750	33,071	36.0	19,575	21.3	2,163	2.4	36,941	40.3
1997	103,292	39,732	38.5	21,178	20.5	2,605	2.5	39,777	38.5
1998	99,625	36,287	36.4	23,624	23.7	2,805	2.8	36,909	37.1

자료 : 대검찰청

<표 4> 학생들의 주요 폭력 피해율 (1999)<sup>8)</sup>

내용	전체 (1,919)	남자		여자	
		중(484)	고(495)	중(436)	고(504)
괴롭힘	23.1	33.3	29.3	17.2	12.3
금품갈취	27.6	47.9	28.7	21.3	12.3
신체적 폭력	40.8	56.0	57.8	26.4	21.8
언어적 폭력	19.4	30.4	23.0	12.4	11.3
성적피해	38.7	-	-	28.3	47.6
전체 폭력	1095	364	315	398	182
피해율*	(57.1)	(75.2)	(70.9)	(45.4)	(36.1)

자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에 대해 도내 언론은 전체적으로 볼 때 학교 밖에서 피해는 감소하고 있으나 학교 내에서 금품을 빼앗기거나 폭행을 당하는 학생들은 늘고 있다.<sup>9)</sup>고 보도하고 있다.

<표 5> 제주도 학생폭력 실태(1999)<sup>10)</sup>

(%)

구분	금품피해학생수			폭행피해학생수			집단따돌림 가해 학생수			성폭행피해학생수		
	중	고	계	중	고	계	중	고	계	중	고	계
1997	4225 (81.2)	980 (18.8)	5205	1068 (63.8)	606 (36.2)	1674				0	0	
1998	1805 (69.3)	798 (30.7)	2603	887 (59.3)	609 (40.7)	1496	34 (53.1)	30 (46.9)	64	1 (50.0)	1 (50.0)	2
1999	1267 (69.8)	549 (30.2)	1816	613 (57.0)	462 (43.0)	1075	19 (65.5)	10 (34.5)	29	1 (100)	0	1

자료 : 제주도교육청

8) 여기에서 “전체 폭력 피해”라고 하는 것은 놀림 및 욕설 등 상징적 언어폭력 및 성적인 피해를 제외하고, ① 괴롭힘, ② 금품 갈취, ③ 신체적 폭행(구타), ④ 위협(협박) 가운데에 서 어떠한 것이라도 피해를 당해본 적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9) 「한라일보」, 2000년 1월 13일자 참조.

10) 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통계」, 1999.



<표 6> 제주도내 중·고등학교 비행학생현황

(%)

구 분		비행 유형별 학생수							합계
년도	학교	절도	폭행 상해	성폭행	가출	약물 오남용	음주 흡연	기타	
1996	중학교	59 (35.8)	0 (0.0)	0 (0.0)	77 (46.7)	0 (0.0)	14 (8.5)	15 (9.0)	165
	고등학교	78 (9.4)	68 (8.2)	0 (0.0)	280 (34.0)	0 (0.0)	239 (28.9)	161 (19.5)	826
	합계	137 (13.8)	68 (6.9)	0 (0.0)	357 (36.0)	0 (0.0)	253 (25.5)	176 (17.8)	991
1997	중학교	55 (16.4)	18 (5.4)	0 (0.0)	47 (14.0)	0 (0.0)	189 (56.4)	26 (7.8)	335
	고등학교	71 (8.3)	72 (8.4)	0 (0.0)	303 (35.6)	0 (0.0)	252 (29.6)	154 (18.1)	852
	합계	126 (10.6)	90 (7.6)	0 (0.0)	350 (29.5)	0 (0.0)	441 (37.2)	180 (15.1)	1,187
1998	중학교	64 (18.2)	16 (4.6)	1 (0.3)	61 (17.4)	0 (0.0)	191 (54.6)	17 (4.9)	350
	고등학교	57 (7.4)	61 (7.9)	0 (0.0)	176 (22.8)	0 (0.0)	177 (23.0)	300 (38.9)	771
	합계	121 (10.8)	77 (6.9)	1 (0.1)	237 (21.1)	0 (0.0)	368 (32.8)	317 (28.3)	1,121

자료 : 제주도교육청

### 3) 학생비행의 특징 및 경향

#### (1) 피해 비율의 증가와 장기화

학생비행에 대한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sup>11)</sup>에서는 36.1%로 나타났고, 김준호의 조사<sup>12)</sup>에서는 비행범죄 피해비율이 36.1%, 재산범죄 피해비율이

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소식』, 제39호, 1996.

12) 김준호 외, 「한국의 청소년 비행집단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42.5%, 어떤 비행이라도 피해를 받은 비율이 58.3%로 집계되어 그 피해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40%이상의 피해자가 한 달에서 2년 이상의 장기적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전방화와 육체적 비행 증가

금품갈취나 절도, 위협이나 협박은 교실 안, 학교 안, 학교주변 등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학원, 전자오락실, 길거리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금품갈취는 학교주변과 전자오락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 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장소가 잠재적 피해 대상 지역에 해당된다.

가장 눈에 두드러진 피해는 육체적인 상처이며, 정신적 피해는 폭력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복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 불안, 등교거부, 정신과 치료, 자살시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 (3) 가해자와 피해자의 동시성

학생비행은 비행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청소년으로 폭력의 가해자가 피해자와 같은 생활공간에서 생활하고 있고, 일부 청소년은 폭력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특성을 지닌다.

실제로 충청남도청소년상담실에서 95년 청소년 1,2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에게 자기보고를 하게 한 결과 남을 구타하거나 폭행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학생이 12.4%이고, 위협이나 협박은 11.4%, 성적놀림은 7.8%의 학생이 경험있다고 답변하였다.<sup>13)</sup> 이 수치는 같은 행위의 피해율의 1/2이나 1/3 수준이긴 하지만, 중·고등학생의 10-20%정도가 남을 폭행, 협박, 성적 놀림 등을 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 충청남도청소년상담실, 「청소년과 폭력」, 제1회 심포지엄 자료집, 1998. p.28.

#### (4) 교내 집단적 행위

학생비행은 단독으로보다는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집단성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강하다. 남학생의 평균 집단 가해자수는 2.78명인데 반해 여학생의 평균수는 4.01명이다. 그리고 가해 학생은 교내의 아는 학생인 경우가 많다.

#### (5) 자구책 강구의 곤란

일부 청소년은 학생비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학교 가기를 싫어하거나(12.1%),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리고(7.9%) 있다. 또한 등·하교시 폭력에 대한 대비로 여러 사람이 함께 가거나(18.0%), 빼앗길 돈(life money)(8.5%)이나<sup>14)</sup> 흉기(4.0%)를 가지고 다니기도 한다.

피해 학생들은 대부분 가해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무서워서 가만히 있거나 도망치는 것과 같은 소극적인 대응이 고작이고 대항, 항의, 소리지르기 등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대응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비행의 가해자는 대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고 몽둥이나 칼과 같은 흉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 2. 學生懲戒의 選擇

우리 나라의 경우 학생비행이 발생했을 때 학교가 취하는 대표적인 해결 전략이 왜 학생징계인가? 연구자가 50여명 정도의 중등학교 학생부 교사들과 실제 면담을 해보았을 때<sup>15)</sup> 그 결과 학생비행이 발생했을 때 80% 이상이

---

14) 김준호 외, 「한국의 청소년 비행집단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학생징계라는 해결전략을 선택했고, 70% 이상의 교사들이 학생징계라는 방법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믿고 있었다.

물론 이에 대한 이유는 많겠지만 단적으로 말한다면 대다수의 교사는 물론 일반인들 역시 학생비행은 사회적 위험도나 학교질서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 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행위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학생비행 차원에서 학교에서 중점 지도하는 행위로는 구타·폭행, 도박, 음주·흡연, 무단결석, 금품갈취, 무단가출, 불건전한 이성교제, 불법집회·서클 참여, 형사입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6)</sup> 이들 행위는 교과교육과 관련된 규범이 아니며 모두 학생생활에 관련된 규범이라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구타·폭행, 도박·금품갈취, 불법 집회·서클 참여, 형사입건은 시민규범 중 형벌규범에 속하고, 음주·흡연 및 불건전한 이성교제는 미성년자 규범, 무단결석과 무단가출은 학생규범 중에서 학교규범에 속한다. 특히 학생비행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히 형벌규범이다.

실제로 징계 처분한 사건에서 제일 많이 발견되는 행위는 폭력, 금품갈취, 절도, 흡연, 음주, 가출, 무단결석, 유해업소출입, 따돌림 등 형벌규범과 미성년자 규범 그리고 학생규범이 혼재하고 있지만, 특히 형벌규범의 경우는 학생징계라는 것이 학교의 재량임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방법이 거의 대부분에 걸쳐 학생징계의 비중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것을 볼 때 학생징계에는 사회의 이익이 상당 정도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sup>17)</sup>

---

15) 앞의 주4) 참조

16) 이 역시 중고등학교 학생부 교사들과의 면담에서 얻어진 결과이다.

17) 1993년의 경우 소년범죄(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된 행위) 중 학생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59.7%이고, 학생 범죄 중 폭력사범이 35.2%로 다수를 차지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징계와 형사처벌은 상당 부분 그 행위 면에서 유사하다.(문화체육부, 청소년백서, 1994, pp.482~483.)

학생비행 가운데서도 형벌규범의 경우 해결전략으로서 전적으로 학생징계에 의존하는 이유는 공동체의 질서 유지라는 구조 기능적인 문제의식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sup>18)</sup> 사회적 위험도가 높다고 간주되어지는 학생을 공동체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한다는 발상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학생을 징계할 것인가 하는 점은 크게 일부 소수의 학생만이 규범을 위반하는 습성을 갖고 있다고 보느냐 아니면 모든 학생이 규범 위반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전자를 취할 경우 소수 일탈 학생의 변별과 그 학생이 한 행위의 평가를 중심으로 하여 징계의 초점은 문제 학생의 확인에 맞추어진다. 이에 비해 후자의 입장을 취할 경우 모든 학생이 규범 위반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만큼 위반자의 개선을 지향하며, 징계의 초점은 문제 학생의 확인이 아니라 문제 행위의 확인에 모아진다. 전자를 변별·격리 지향 모형이라고 하고, 후자를 진단·처방 지향 모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적 전제와 과정 논리 및 그 지향에 따라서 볼 때, 변별·격리 지향 모형에서는 선도의 수단으로서 규범을 위반한 '소수' 학생에 대하여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자기 개선을 촉구하는 반면, 진단·처방 지향 모형에 입각할 때에는 어느 학생이나 그러한 규범 위반에 빠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외부 지원과 원조를 제공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다. 따라서 당연히 변별·격리 지향 모형에서는 선도과정에서 격리 지도를 취하는 반면, 진단·처방 지향 모형에서는 협동적 개선을 중시한다.

나아가 재범에 대해서도 변별·격리 지향 모형에서 보면, 재범의 방지를 믿은 학교의 신뢰를 위반했다는 징표로서 의미를 부여하는 반면, 진단·처방 지향 모형에서는 해당 행위가 습관성 행위인지를 검토하고, 개선의 저해요

---

18) 특히 한국사회의 역사성과 관련하여 이 부분은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강화된 면이 없지 않다.

인을 탐색하는 기회로 삼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 때문에 당연한 귀결로서 전자의 경우에 징계의 개선과제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도구의 개발을 들 수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규범 위반의 원인을 탐색하고 선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중시한다.

결국 형벌규범의 경우 학생징계의 비중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것은 학생징계에 대한 변별·격리지향 모형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다시 말해 학교폭력에 관련한 변별·격리지향을 통해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교육계의 전략이라는 말이 된다.

### 3. 學生懲戒의 構造

#### 1) 학생징계의 개념과 과정

학생징계는 학생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처분임에 비해 처벌은 꾸짖는다거나 기립하게 하는 것 등 사실행위로서 대표적인 것에는 학생 처벌을 들 수 있다. 학생징계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생활지도는 어디까지나 학생의 자발적인 성숙을 지원하는 것<sup>19)</sup>인 반면, 징계는 학생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학교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강제적 처분으로서 양자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징계규정의 제정권은 학교에 있지만 각 시도 교육청 별로 예시 안이나 지침을 제정하여 시달하고 있으며, 각 학교에서도 이를 대체로 수용하되, 대부분 학교의 실정에 따라 부분적인 수정만을 가해서 이용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 징계의 종류로서 학교내의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처분을 들고 있다. 학교내의 봉사의 경우 일정기

---

19) 상계서, p.19.

간 동안 잘못에 대하여 누우치고 회개하게 하는 처분으로서<sup>20)</sup> 학생의 법적 신분에는 별다른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 사회봉사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걸쳐 확정된 기간만큼 권리를 제한하는 것인 반면, 특별교육은 비교적 장기에 걸쳐 불특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것으로 당해 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며, 퇴학처분은 완전히 그 권리를 박탈하는 징계이다.

따라서 학교내 봉사는,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과는 다른 성질을 갖는 것이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법적 효과를 수반하는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다.<sup>21)</sup>

학생징계의 과정은 학생부의 담당교사가 위반행위를 조사하는 데서 시작한다. 학생부에서는 담당교사의 진상조사와 담임교사의 확인 그리고 당해 사건에 대한 서면 또는 구두 의견을 바탕으로 심의한다. 보통 학교내의 봉사나 사회봉사의 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학생부 심의로 종결한 후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 하지만 특별교육 이상의 경우는 학생부를 거쳐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학교장은 징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받아 검토한 후 시행하기도 하지만, 그 심의 결과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심에 부의하기도 하며, 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하게 하기도 한다. 일부 학교에서는 비교적 중한 징계처분으로서 특별교육이수나 퇴학처분의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직원회의의 의결정족수를 높게 규정하고 있다. 보통의 경우 학생부의 심의나 징계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되면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징계처분을 시행하게 된다.

징계가 확정되면 학부모에게 통지하여 공동 선도의 책임을 지도록하며

---

20) 김낙운, 『현행 교육법해설』, 서울 : 하서출판사, 1986, p.280.

21) 今村武俊·別府 哲, 『學校教育法解説』(初中等教育編), 田中重彌, 1968, pp.345~380.

징계 처분의 내용에 따라 등교하여 학교내의 봉사 또는 등교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정해진 특별지도가 이루어진다. 특별지도로는 보통 봉사활동, 반성문 작성, 특별과제(보통 교과관련) 제출 등이 있으며 학교에 따라 상담활동, 인성교육, 노작교육, 체력단련, 독서지도, 청소, 자습, 교우관계 재조정, 회양록, 각서, 서약서 작성 등이 있다.

## 2) 학생징계의 논리

학생징계의 논리는 학생징계를 둘러싼 주요 개념의 의미 체계와 그 개념간 연관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학생 징계의 경험적 특성을 검토하기 위한 분석의 틀로서 이용된다. 학생징계의 논리는 징계의 존재에 관한 부분으로서 징계의 정당화 논리와 함께 징계의 운용에 관한 부분으로서 징계의 시행논리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징계권의 발생과 본질 및 그 지향과 관련되어 있으며, 후자는 징계권 또는 징계제도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운용의 소극적 한계와 적극적 준거 및 그 통제방식과 관련되어 있다.

먼저 정당화 논리는, 학생의 '교육적 이익'과 관련해서만 학생징계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재학관계를 특별권력관계로 이해하던 전례의 관점이 부정되고, 교육받을 권리가 핵심적인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는 징계를 '교육상 필요'의 요건과 한정적으로 연결짓고 있다. 한편, 학생징계는 교과교육과 달리 교육적 이익을 위한 소극적 수단인 만큼 可罰의 범위는 한정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데 그 기준은 '학생의 본분 위반'으로 설정될 수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다음으로 시행논리는, 학생징계의 과정에서 학교의 포괄적 재량권은 인정되지만 학생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재량의 한계기준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량의 한계 내에서도 재량의 교육적 행사 준거가 무시되어



서는 안 된다. 전자로는 비례성과 형평성 및 헌법상 기본권이 지적되며, 후자로는 공정성, 청소년의 특성 고려, 낙인효과의 고려, 적합성, 교육권의 존중 등 5가지를 제시한다.

더불어 학생징계는 전문기술적 재량사항으로 사후 구제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재량권의 통제장치로서 적법절차의 중요성이 지적된다. 이러한 적법절차의 보장은 단순히 절차의 적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의견을 교환 가능하게 하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적 준거의 충족과도 연결된다.

학생이 징계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학교의 학생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학생의 신분은 학생과 학교의 재학관계에 의해 형성된다. 학생의 재학관계는 공·사립 학교를 막론하고 다음 6가지의 특징을 들 수 있다.

- ① 학교 설립자(학교의 장이 대표)와 학생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으로서, 학교의 장이 내린 입학허가가 청약이고, 학생에 의한 입학 수속 완료가 승낙에 해당한다. 다만, 국민의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해 계약 체결 상대방 선택의 자유는 일정한 정도 제약된다.
- ② 교육서비스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호혜적 계약이 아니라 일방적 수혜계약이다.
- ③ 교육서비스는 계약체결 시에 그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없는 관계로 계속해서 상호 의사의 확인과 동의,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계에서 서로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고 주장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 ④ 의무 불이행(교육서비스의 제공 의무 해태 및 학생의 의무 위반 등)에 따른 처리로서 계약의 해제(재학관계의 해소)보다는 상호 의사의 조정이 우선시된다.
- ⑤ 학교라는 하나의 당사자에 대하여 다수의 학생이 관계를 맺고 있으며, 교육서비스 제공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내용 결정

및 계약 의무 이행 방식에 대한 개별 학생의 자유는 제한된다.

- ⑥ 교육법상 교육의 이념, 목적, 방침 등에 의해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가 상호 제약된다.

이와 같이 학생의 교육기본권 실현을 본질로 하는 재학관계의 특징을 고려할 때 학생에 대한 징계권도 학생의 교육권을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익과 무관한 별도의, 선행적인 학교의 이익만을 위한 징계권은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징계의 맥락에서 학생은 규범을 위한 특정 학생과 그를 제외한 일반 학생을 포함하므로 교육적 이익도 전자와 후자에 각각 대응한 특수이익과 일반 이익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학생의 보호와 개선, 학교의 질서 유지와 운영의 보장, 도덕적 가치의 존중, 학교의 운영 보장 등을 포함한다.<sup>22)</sup>

일반이익은 특정한 학생이 징계규범을 위반하여 일반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게 하거나 학습을 방해함으로써 일반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는 차원이다. 특수이익은 징계규범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 징계를 가함으로써 당해 학생이 바람직한 태도나 습관 및 의식을 견지하거나 발달시키도록 지도한다는 논리를 토대로 하여 특정한 학생의 교육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 3) 학생 징계규범과 징계의 범주

징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징계규범은 고등학교 학생의 복합지위에 따라 일반 시민으로서 지위에 대응하는 규범, 미성년자로서 지위에 대응하는

---

22) R.S.피터스는 학교에서 벌의 문제가 제기되는 사태로서 학교의 질서유지, 도덕적 가치의 존중, 학교의 운영 보장 등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R. S. Peters, *Ethics and Education*,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66. 이홍우 역, 『윤리학과 교육』, 교육과학사, 1980, p.303.

규범, 학생으로서 지위에 대응하는 규범의 3가지 종류가 나타나는데, 이중 시민규범은 다시 도덕규범과 형사관련 규범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징계처분의 실제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행위를 보더라도 폭행·구타, 금품갈취, 흡연, 절도, 음주, 무단가출, 무단결석, 유해업소출입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시민규범, 미성년자 규범, 학생규범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학교의 학생징계권이 미치는 범위와 관련하여 실제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행위의 발생장소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볼 때 학생징계의 공간적 규율 대상은 학교안과 학교밖에 모두 미치고 있으며 그 비율을 보면 학교 밖의 행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학생징계의 경우 예비나 미수에 그친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는 규율대상을 파악하는 또 다른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비나 미수는 처벌하지 않아, 행위에 따라서 다르게 또는 경감하여 처벌하는 형법의 규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징계의 가능조건으로서 '교육상 필요'를 형식적으로 파악하면 징계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모두 '교육상 필요'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징계규범 위반 자체를 '교육상 필요'와 동일시하는 것으로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일단 위법성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것과 같은 해석방식이다.

우선 교육상 필요는 '윤리적 부적합성'의 판단에 있다고 보는 관점<sup>23)</sup>이 있다. 즉, 학생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했다는 데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형벌규범을 위반한 경우에 사회이익의 보호나 그 회복의 차원에서 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듯이, 학교규범 위반의 경우에도 그 자체로서 학교의 기능 회복이나 그 보호가 아니라, 학생으로서 품위, 도의, 위신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행위라는 데서 가벌성을 찾는 것이다.

---

23) 이경운, "대학생의 법적 지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pp.159.

이와 달리 '교육상 필요'는 학교 활동이 정상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학교의 '질서유지'라고 보는 관점<sup>24)</sup>도 있다. 학생 징계는 기본적으로 학교의 존립을 지킴으로써 재학하고 있는 일반 학생의 교육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며 이것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행위는 징계를 통해 학교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라고 본다. 이미 대중교육 시대를 맞이하여 학생이 '사회적으로 고고한 품성의 소지자'로 평가되지 않는 사회 상황에서 '윤리적 부적합성'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통해 징계의 가벌성을 결정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학생징계는 학교의 질서유지라는 기능적인 면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질서유지는 가장 협소하게는 물리적 질서만으로 국한할 수도 있지만, 좀더 넓게는 학교가 사회적 유기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설정된 우호적인 교육환경의 유지와 보존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결국 윤리적 부적합성을 척도로 삼을 때 가벌의 범위는 가장 확대되는 반면, 학교질서의 침해를 척도로 삼을 때는 가벌의 범위가 가장 제한된다. 이에 비해 '학생의 본분 위배'를 척도로 삼을 경우 가벌의 범위는 양자의 중간 정도를 차지한다. 하지만 가벌의 척도를 실질적인 개념으로 규정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징계규정의 위반 자체, 곧 규범 위반을 가벌의 판단기준으로 삼는다면 징계규정의 징계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모두 가벌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가벌의 범위와 징계규정상의 징계요건의 범위가 같아지게 되어 가벌의 범위가 가장 넓어진다.

#### 4) 학생징계의 목적

처벌의 일반적인 목적으로는 응보, 억제, 개선의 3가지를 들 수 있다.

---

24) 상계 논문, p.161.

응보의 측면은 규범 위반에 대한 반작용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을 말하는 데,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받게되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수업정지이며, 2차 적으로 징계에 따른 낙인효과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억제와 방지는 위반행위의 발생을 억제하고 방지함으로써 위반행위의 재발이나 확산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개선은 처벌을 가함으로써 규칙의 합리성을 이해하게 하고 앞으로 그 규칙을 준수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징계규정의 명칭으로 '선도규정', 징계담당위원회의 명칭으로 '선도위원회'라는 용어가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개선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하지만 징계 받은 학생의 지도방법은 주로 반성문 작성, 특별과제물 제출, 봉사활동의 3가지에 국한되어 있고, 실제로 특별지도 프로그램은 매우 미비되어 있는 형편이다.

학생징계의 경우에 왜 징계처분을 가하는가를 분석할 때 두 가지 문제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학생징계에서는 흔히 억지효과를 겨냥한 징계처분이 '교육상 필요'를 명분으로 하여 행해지고 그것이 징계의 중요한 이유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즉, 위반행위와 징계처분간에 형평의 문제를 무시하고 억지효과를 겨냥하여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도 중한 징계를 내려 본보기로 삼는 것으로 억제론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방법이다.<sup>25)</sup> 하지만 이것은 당해 학생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행위에 비례하지 않는 불이익을 포함함으로써 사회적 정의의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학생징계에서 징계의 정당화 논거로서 당해 학생의 개선이라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된다. 하지만 학생은 성인과 같이 충분한 판단력과 해석능력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볼 때 징계를 받음으로써 규칙의

---

25) K. A. Strike, and J. F. Soltis, *The Ethics of Teaching*,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1985, pp.28~29 참조.

합리성을 이해하게 되어 그 규칙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준수하게 한다는 관념을 온전히 수용하기는 어렵다.<sup>26)</sup>

결과적으로 학생징계는 여건의 제약에 따른 필요악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일단 징계가 본질적으로 응보의 성격을 갖는 이상 징계는 공평함을 유지하여야 하고, 행위에 비례하지 않는 과도한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안 되며,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상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즉, 비례성과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불어 오늘날 학교교육이 집단적 재학관계를 토대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제한된 수준에서나마 최후 수단으로서 억제론의 관점도 완전히 거부하기는 어려우며 이 점에서 보면 징계는 예측 가능하여야 하며, 적당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다.<sup>27)</sup>

## 5) 징계의 유형



각급 학교들의 징계규정은 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를 근거로 하고 있다. 징계종류는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퇴학처분이다. 이외에 훈계 및 퇴학보류 같은 징계는 학교에 따라 적용되기도 하고 적용되지 않기도 한다.

징계유형은 학생의 문제행동의 경중에 따라 나누어진다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 학교내의 봉사는 문제행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징계로 교실수업에는 참여하되 반성문을 쓰거나 수업준비, 선생님보조, 학교 내에서 환경미화 등의 벌을 받는다.

둘째, 다음 수준의 징계는 사회봉사인데 사회봉사는 학교 계획에 의거

---

26) Cornel M. Hamm, *Philosophical Issues in Education: An Introduction*, New York: The Falmer Press, 1989, p.115.

27) Cornel M. Hamm, *op. cit.*, p.114.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길거리 청소, 쓰레기 수거, 교통정리, 불우시설 봉사, 환경감시, 우체국 등 공익시설 업무 지원 등에 위탁하여 일정기간 학생이 반성하도록 하는 징계이다.

셋째, 특별교육이수의 경우에는 자체 교육 시설을 활용한 심성교육, 외부 시설들이 운영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가, 약물·흡연·알코올중독 치료 학교 입학, 정신적인 치료교육이수, 학생과 부모와의 합동 교육프로그램 참가, 부모에게 특별교육 의무 부과 등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는 징계이다.

넷째, 퇴학처분은 당해 학교에서 퇴학처분을 하고 중퇴생 협의회를 활용하거나 다른 학교 또는 직업 교육 훈련 기관을 알선하는 징계이다.

## 6) 학생징계의 절차

학교의 재량권은 대체적으로 보아 징계과정의 초동 단계인 징계 회부 여부에서 시작하여 징계기준표상 징계처분의 선택, 징계의 가중·경감 판단, 징계기간의 결정, 특별지도 내용의 선택에 이르기까지 고루 행사되는 것이 상례이다. 물론 학교간에는 재량권의 행사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는 엄벌주의를 취하는 학교와 징계 소극주의를 취하는 학교의 구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법절차의 측면은 대단히 소홀히 취급되고 있으며 제도화되어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징계규정의 사전 통지나 학생의 변론권의 보장은 극히 일부의 현실에 지나지 않으며 나아가 징계규정의 위반에 대한 혐의가 있는 학생을 조사하는 장소 역시 조사과정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환경이며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해 학생의 자백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학생징계는 교육적 자유재량이라고 인정되고 있으며, 그만

름 학생징계와 관련하여 학교는 판단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자유재량'이라는 개념은 행정법상 원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영역과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을 구분 짓기 위한 필요에서 사용되어져 왔다. 학생징계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재량이 허용되어 있고 또한 요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학생징계에서는 징계요건의 판단에 대한 재량이 허용되어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서는 징계의 요건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 규정된 '교육상 필요'라는 개념은 특정한 행위의 징계 가능성을 판단하는 준거개념이며, 그 본질은 '학생의 본분 위배'에서 찾을 수 있다.

셋째, 아무리 형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있더라도 그 책임을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면 형벌을 가할 수 없듯이 학생징계에서도 행위자의 책임주의를 기초로 한다.

넷째, 구체적으로 징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한다면 어떤 처분을 선택할 것인지에 관해 재량이 인정된다. 이것은 징계의 정책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학생징계의 특징이 부각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징계를 받은 학생의 지도방법을 비롯하여 징계처분의 시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상의 재량이 인정된다. 이것은 법적 요건의 판단과 그 효과의 선택이라는 엄밀한 의미의 재량 판단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지만 학생징계를 넓게 파악하여 징계처분과 그 이후의 시행과정을 모두 포함하여 언급한다면 재량의 또 하나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학생징계에서는 상당히 포괄적인 재량이 허용되어 있다. 다만, 한 가지 언급할 점은 학생징계를 교육적 자유재량이라고 할 때 '교육적'이라는 말이 단순히 징계처분을 자제하거나 처분의 내용을 경감하



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며, 재량이 행사되는 차원에 따라 서로 약간씩 달리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나아가 교육적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과 '교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 7) 학생징계의 특성

첫째, 학생징계는 학생의 3가지 복합적 지위에 따라 시민규범, 미성년자 규범, 학생규범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징계규범의 다원성을 특징으로 한다. 하지만 징계규정이나 징계의 운용방식은 규범의 다원성을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학생징계는 직접적인 불이익으로서 수업정지와 간접적 불이익인 낙인효과를 발생함으로써 이중의 불이익을 낳는다. 하지만 징계 받은 학생의 선도·개선을 위한 지도는 매우 취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셋째, 학생을 선도하는 데는 2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특별지도를 실시하는 적극적 개입의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선도가능성을 평가하여 징계를 경감함으로써 선도를 기대하는 소극적 방식이다. 학교 현장에서 '선도'는 주로 후자의 방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학생징계는 학교의 포괄적 재량권에 기초하여 운용되고 있지만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법절차의 장치는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징계결정 과정에서 변론권을 인정하는 학교는 현실적으로 매우 드문 형편이다.

다섯째, 학생징계의 시행 모형으로서 변별·격리 지향 모형과 진단·처방 지향 모형 중 학교 현장에서는 두 가지 모형이 혼재되어 적용되고 있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격리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선도프로그램은 빈약하고, 징계의 가중사유로서 징계 받은 경험을 증시하고 있다.

### Ⅲ. 研究의 方法

본 연구의 주목적이 학생비행과 학생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비행 보다는 학생징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합당할지 모르나 오늘날 학생비행과 학생징계는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앞에서 학생비행 문제를 언급하고 이어 학생징계 문제를 다루었다.

학생비행의 실태 및 학생징계 현황을 위해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면접조사,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징계규정, 체벌규정,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1. 研究對象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학생부 담당교사들로 하였다.

학생폭력과 징계에 관한 설문지를 만들어 500부를 배포하고 3월 20일부터 3월31일까지 12일간 반응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의 배부와 수합은 직접 연구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실시하였으며 90.2%인 451부를 회수하였으나, 그 중에서 응답에 불성실한 49부를 제외한 402부만을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질문지를 집계하여 통계 처리한 사례 수는 다음과 같다.

<표 7> 설문지 회수 현황

구 분	사 례 수	백분비
중학교	198	49.3
인문계고등학교	119	29.6
실업계고등학교	85	21.1
계	402	100

<표 8> 학교별 회수 현황

구 분	사 례 수	백분비
남학교	91	22.6
여학교	86	21.4
남녀공학	225	56.0
계	402	100

<표 9> 설립별 회수 현황

구 분	사 례 수	백분비
국공립	294	73.1
사립	108	26.9
계	402	100

## 2. 測定道具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질문지로서 연구자에 의해 제작된 학생비행, 학생징계로 학교 급별로 중학교, 인문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남자학교, 여자학교, 남녀 공학으로 구분하였으며 설립별로는 국공립, 사립으로 구성하여 학생비행과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학생비행의 현실을 보다 생동감 있게 전하고자 각 학교 학생부 교사의 협조를 얻어 면접조사, 설문조사, 징계규정, 체벌규정과 사례연구를 병행하여 연구하였다.

## 3. 資料處理 方法

전체 설문지 중에서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부적절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402부가 분석대상이 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 처리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하고 중학교별, 인문계고등학교별, 실업계고등학교별,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별로 교차분석에 의존하여 통계처리 하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질적 연구방법과 양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조사는 면접조사(50명), 설문조사(402부), 그리고 학교 징계규정(10개교), 체벌규정(제주도교육청)은 물론 학생면담, 관계기관 방문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사례를 중심으로 학생들과의 면담 내용을 그대로 밝히는 민속지적 방법론을 차용함으로써 학생비행의 현실을 보다 생동감 있게 전하고자 노력하였다.

## IV. 結果 및 解釋

### 1. 學生懲戒의 檢證

#### 1) 제주도 학생비행 사례

학생비행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보고는 본 연구를 위해 매우 시사적인 내용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최근에(1998. 3~2000. 4) 제주도에서 발생한 학생비행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사례 20가지를 중심으로 보고한다.<sup>28)</sup>

제주도의 학생비행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사례 (1) : 교사에 대한 폭력.

1998. 3. 19 5교시 P고교 1학년 교실에서 유00 교사가 수업 중 늦게 들어오는 김00양에게, 종이 찢 다음 들어오고 용의가 단정하지 못하다고 지도하자 선생님에게 반항하여, 선생님이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자 김00양이 학생들 보는 앞에서 선생님을 손으로 때리며 머리를 잡아당겨 징계위원회에서 퇴학 조치함.

##### ▶ 사례(2) : 기물 파손

1998. 4. 24. 09:40분경 흡연실 마련, 두발 자율화, 등교시간 연장, 수업 시간에 잠을 잘 수 있도록 요구 및 항의하다 1교시 수업 중 한00군을 시작

---

28) 이하 사례는 본 연구자가 직접 조사하고 기록한 것으로서 모두 50여가지가 되나 대표적인 것 20건만 간추려 제시하였으며 학생과 학교의 입장을 고려하여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으로 2층 복도에서 유리창을 깨기 시작하여 24명 내외 학생이 집단으로 학교 유리창 110여장을 깨며 수업을 거부하고 교사에게 반항하는 학생을 설득하여 수업에 참여하게 하고 보호자를 학교에 나오시도록 하여 사안을 설명하고 귀가조치후 징계위원회에서 주동 학생에게는 다른 학교로 전학 또는 자퇴원을 제출하도록 하고, 만약 전학 또는 자퇴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퇴학조치 하기로 하여 사안이 가벼운 학생에게는 교칙에 의거 징계 처리함.

▶ 사례(3) : 교내폭력

1998. 4. 25 09:10분경 H고교 3학년 권00군이 음주하여 만취된 상태에서 1학년 6반 교실에 들어가, 담임 양00교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로60cm 세로35cm인 차량출입 금지 표지판으로 강00양을 때렸으며, 박00양을 발로 차고 손으로 때려 안경이 깨지고 얼굴에 상처가 났음. 2명 학생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한 후 피해학생과 함께 집으로 가서 보호자에게 알리고 협조를 당부하였고, 권00군은 보호자를 학교에 오도록 하여 인계하고 보호자에게 사안을 설명함. 징계위원회에서 퇴학처분이 결정되자 본인과 보호자가 전학을 희망하여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전학함.

▶ 사례(4) : 성폭력

1998. 6. 18 22:30분경 J고교 정00양은 중학교 3학년 때 반 친구들과 반창회를 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구좌읍 세화리와 하도리 경계인 소나무 숲에서 남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여 1998. 6. 18. 15:30 J고교 양호실에서 자연분만, 양00교사와 김00교사가 S산부인과로 후송하여 입원치료 후 등교하여 1999.2 졸업함.

▶ 사례(5) : 절도

1998. 10. 1~10. 20일 사이에 8회에 걸쳐 Y중 하00군, 김00군, 전00군이 한천초등학교 정문에 세워둔 봉고 차에서 C. D플레이어(2회), 인화동 가정집에서 저금통에 들어있는 돈 25,000원, 시민회관 옆집에 있는 운동화, 인화동에서 여자핸드백 속의 돈 400,000원, 신광초등학교 근처 가정집에서 50,000원 등 주로 금품을 훔쳐 서울로 가려다 공항에서 적발되어, 선생님의 인도로 학교에 와서 지도 받고 보호자와 상담하여 차후 교칙을 위반하면 징계하기로 하여 귀가 조치함.

▶ 사례(6) : 음란물 소지

1999. 5. 3 09:10분경 E중학교 2학년3반 교실에서 최00군이 음란 디스켓을 학생들과 돌려보기 위해 학교에 가지고 왔다가 소지품 검사에서 2학년3반 담임선생님에게 적발이 되어 물건은 압수하여 보관중이며, 학생은 담임 선생님의 지도를 받음.



▶ 사례(7) : 성희롱

1999. 5. 9 B중 1학년8반 정00군이 교실에서 같은 반 여학생들의 얼굴,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만지다 김00 담임 교사에게 적발되어 지도함.

▶ 사례(8) : 교내폭력

1999. 5. 21 13:30분경 Y중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 신00군과 송00군이 서로 폭언을 하며 싸움을 하던 중 5교시 수업종이 울려 수업을 하기 위해 나온 체육선생님에게 발견되어 선생님이 지도를 받고 귀가하여 송00군은 팔이 다쳐 깁스를 함. 다음날 09:10분경 신00군이 교실에 있는 송00군을 현관으로 불러 주먹과 발로 폭행하던 중 1교시 수업이 시작되어 교실로

들어가 수업을 받고 점심시간이 되어 13:30분경 신00군은 다시 송00군을 2층계단위 넓은 공간으로 불러 친구 한00군 외 6명이 보는 앞에서 일방적으로 주먹과 발로 얼굴과 가슴, 배, 등을 때렸다.

피해자 송00군은 집에 가기가 무서워 3학년 김00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김00교사가 황00군과 집에 같이 가도록 하고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하도록 함. 다음날 아침 08:30분경 송00군을 불러 확인 결과 아무런 일이 없어 양쪽 보호자를 학교에 오도록 하여 가정에서 지도를 당부하고 차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징계조치하겠다고 알림.

▶ 사례(9) : 협박 공갈

1999. 6. 27 일요일 16:00분경 사라봉 소나무 밭에서 K중 3학년 김00양, 성00, S중3 김00양, 임00양 D중 김00양이 J중 3학년 송00양에게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심부름 및 연락을 잘 하지 않는다, 너 똑바로 하지 못할래’ 하며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며 ‘앞으로 시키는 데로 하지 않으면 너 그대로 놔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친구들을 시켜서 학교 다니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자 송00양은 무서워서 잘 따르겠다고 약속하여 헤어짐. 이 사실을 안 학생부 선생님이 같은학교 학생 성00양, 김00양을 불러 지도하고 성00양을 징계함.

▶ 사례(10) : 집단폭행

1999년 9월 13일 08:50분경 E중학교 2학년7반 복도에서 2학년1반 송00양이 3학년선배들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고 건방지다는 이유로 3학년 여학생5명이 10:10경 쉬는 시간에 교실로 와서 송00양에게 복도로 나오라고 하여 복도에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가슴과 다리를 차고 머리를 주먹으로 때림. 이 사실을 안 김00교사가 가해자, 피해자



전부 불러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로 약속하고 차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함. 다시 폭력을 하면 징계하기로 경고함.

▶ 사례(11) : 금품 갈취

1999. 9. 21 12:50분경 J중학교 2학년2반 교실에서 송00양이 같은 반 박00양의 돈 10,000원, 김00양의 돈 1,000원, 김00양의 돈 100원을 본인들이 없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빼앗아 송00양이 친구 2명과 함께 한천초등학교 앞 문구점에서 디스 담배를 1갑 사고, 17:10경 근처에 있는 고래고래노래방에서 돈을 썼음. 학생부 김00 교사가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상담후 보호자가 피해 학생들에게 1999. 11. 4일 금품을 돌려줌.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하려고 하자 전학을 희망하여 청주시로 전학.

▶ 사례(12) : 폭력, 괴롭힘, 강요

저는 학기초부터 제 뒷자리에 앉은 0학년0반 강00군, 김00군, 차00군에게 여러 가지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앉아서 수업을 받는 자리도 제 뜻대로 앉는 것이 아닙니다. 그 녀석들이 괴롭히기 좋은 자리에 강제로 앉게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녀석들이 책을 챙겨주고 숙제를 대신 해 주기도 하고 매점에서 과자, 음료수 등을 사다 주어야 하며 라이터, 담배를 보관합니다. 물론 이것들은 강요에 의한 것들입니다. 심부름을 하다가 선생님께 발각되어 압수당하면 제가 그 녀석들에게 돈을 줘야 합니다 심심하면 수업시간에 소리를 지르게 하고 만약 하지 않으면 때리고 요즘 들어 나보다 싸움을 잘하는 아이들에게 별명, 이름 등을 수업시간에 계속 부르며 하지 않으면 계속 때립니다. 처음엔 선생님께 말해볼까 했지만 강00군은 선생님께 알리면 죽이겠다고 협박도 하여 보복이 두려워 말을 못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미칠 것만 같고 죽고 싶을 정도입니다. 죽기는 무섭고 집을 나가면 학교에 못 다니고 학교 다니려고 하니 맞을까봐 불안합니다.

지금 팔에는 멍이 들고 부었으며 입안은 2곳이 터져 밥을 먹을 때마다 아픕니다. 더 이상 심부름이랑 맞는 일은 하기 싫습니다 수업시간에 맞을 때 보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원망스럽고 죽고 싶습니다.

선생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루하루가 힘이 듭니다.

▶ 사례 (13) : 집단 패싸움

1999. 10. 1. 09:00경 S중학교 2학년1반 교실에서 A팀 송00양, 김00양, 한00양, 양00양, 이00양, 오00양 중 대표 송00양과 B팀 유00양 김00양, 허00양, 이00양, 고00양 중 대표 유00양이 세력다툼으로 인해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며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싸우다 교사에게 적발되어, 교사의 중재로 서로 사이 좋게 지내고 차후 폭력을 하면 징계하기로 약속하고 서약서 쓰고 헤어짐.



▶ 사례 (14) : 교외폭력

1999. 10. 23 22:00경 일도동 인제 게임매니아 옆 공터에 D중 한00군, 양00군, 강00군, 홍00군, K중 이00군, J중 고00군, 황00군, S중 고00군, 박00군, A중 강00군, 강00군, J중 김00군이 모여, 아메리칸 플라텍에서 생일 파티를 하고 있던 J중 고00군, 한00군을 불러 이유 없이 집단 구타를 하고 철근으로 머리를 때려 상처가 나자, 싸움을 말리는 김00군을 양00군, 고00군이 집 근처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서 쇠파이프로 구타하여 김00군이 순간 기억 상실증에 걸림.

▶ 사례(15) : 구타

1999. 10. 23 22:10분경 D중 윤00양(2년), D중 김00양(2년), S중 이00양(3년), J고교 1년 남학생이 D여중 김00양, 김00양을 인화 초등학교에서 구타하여 피해자 김00양의 고모가 검찰에 신고 경찰에서 조사함. 해당학생들은 학교별로 사안을 보고하고 교칙에 의거 징계처리하였음.

▶ 사례(16) : 괴롭힘

F중 3학년 양00군이 1999년 9월부터 2000년 3월 다른 반 문00군을 매일 아침 자기 집에 오지 않고,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며, 집에 전화를 하여 불러도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며 억지로 끌고 다니면서 괴롭혀왔다.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산 다음 이00군과 문00군에게 돈을 거둬서 내라고 하는가 하면 이00군집에서 1500원하는 물건을 1000원만 주면서 사오도록 하고 돈을 더 달라고 하면 칼로 위협하며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과 발로 계속 때려 김00교사가 보호자에게 연락 지도를 당부함. 차후에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면 징계하기로 하였음

▶ 사례(17) : 절도

2000. 1. 20일부터 3월말까지 여중 2학년 강00양 등 13명은 삼도1동 소재 00 콜라텍에서 같은 학교 후배인 이00양 13세에게 “차비가 없으니 차비를 빌려달라” 면서 6,000원을 일도2동 소재00음식점에서 위 이00양에게 “옷이 예쁘다, 옷을 빌려달라” 고 인상을 쓰면서 위협, 잠바 1점 시가 60,000원 상당 등 39회에 걸쳐 옷과 현금 등 935,400원 상당을 갈취하여 징계 처리함

▶ 사례(18) 교내폭력

2000. 2. 13. 13:00경 고교 2학년 허00군 등 6명은 00고등학교 1, 2학년 교실에서 화이트데이를 맞아 선물을 준비하기 위하여 10개 교실을 돌면서 남아 있는 학생들에게 “있는 돈을 다 내 놓아라” 고 인상을 쓰며 폭언, 37명 학생에게 150,000원 상당을 갈취하여 교칙에 의거 징계 처리함.

▶ 사례(19) : 집단 패싸움

2000년 2월 15일 15:40분경 제주서초등학교 급식소 옆에서 G중학교 양 00군 외 6명과 F중 차00군 외 7명이 학교간 세력다툼으로 집단 패싸움을 하던 중, 0학교 선생님이 오자 도망쳐서 00중학교 뒤편에 있는 노인당에 가서 20여분 동안 싸우다가 차00군이 그만 싸우자고 하자 양00군이 그러면 옆드리라고 하여 발로 얼굴과 배를 차서 차00군이 눈언저리가 붓고 가슴에 멍이 들어 다음날 피해자 부모님을 학교에 오도록 하여 사안을 설명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도록 하였음.

▶ 사례(20) : 교사폭행

2000년 3월 19일 6교시 J 고등학교 1학년 1반 교실에서 S과목 수업 중 P교사가 수업할 수 있는 복장을 하도록 하자 지도에 불만을 품고 항의 P 교사가 Q학생 등을 2대 때리며 또 지도를 하자 왜 때려 하면서 항의를 계속하자 P교사는 너 태도가 뭐냐 지도를 위해서 왜 못 때려 하면서 머리 우측 상단을 2대 때리자 Q학생이 선생님에게 나도 때릴 수 있다고 하면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이 서로 학생들 앞에서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싸우기 시작 계속 싸우던 중학생들이 말려 싸움이 끝나고 학생은 교칙에 의거하여 퇴학 조치함.

## 2) 학생징계의 실제

징계처분의 실제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가장 많이 발견된 징계대상 행위에 대해 조사(설문 14번)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10> 징계처분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행위

( ) : %

구 분	전 체
1. 폭력	334 (27.7)
2. 흡연	197 (16.3)
3. 음주	108 (9.0)
4. 금품갈취	226 (18.7)
5. 따돌림	41 (3.4)
6. 절도	145 (12.0)
7. 환각물질 흡입 및 복용	24 (2.0)
8. 유해업소 출입	59 (4.9)
9. 가출	72 (6.0)
계	1206 (100)

실제 징계처분의 대상으로 가장 많이 발견된 행위는 설문조사 결과 폭력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금품갈취, 흡연, 절도, 음주 순으로 빈도수가 많았다. 즉 시민규범으로서 폭력, 금품갈취, 절도와 미성년자 규범으로서 흡연, 음주가 징계의 주된 사유였다. 이것은 남학교의 경우 시민규범 중에서 넓은 의미의 폭력행위가 주로 징계의 사유로 되어 있는 보고<sup>29)</sup>를 증거 하는

29) 권순천, 남자학교의 징계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청구논문, 1997. pp.34-42.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여기서 학교폭력의 해결전략으로 학생징계가 선호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미성년자 규범으로서 흡연·음주의 빈도가 비교적 높은 것을 보면, 준성인으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학생들의 의식과 미성년자로서 지위를 강조하는 학교의 인식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학생징계는 이러한 규범 갈등을 학교측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해결하는 강제적 조치로서 작용하고 있다. 특이한 사항은 학생규범인 가출이 빈도수가 적다는 사실인데 이것은 제주도라는 지리적 특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징계처분의 빈도가 높은 행위는 일선 학교에서 모두 중점 지도행위에 포함 되어 있다. 따라서 발생빈도가 높은 행위를 중심으로 중점 지도 대상이 설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행위의 발생 장소에 따른 학생징계

학교의 학생징계권이 미치는 범위와 관련하여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 학생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학교는 징계권을 갖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 문제가 학설이나 판례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

미국의 판례 경향을 보면 기본적으로 학교 밖의 행위에 대한 학교의 징계권을 인정하고 있다. 일례로 법원은 피해를 입은 학생의 신체, 감정상의 안정을 해쳤거나 다른 학생, 교사 혹은 학교 재산의 안전과 복지를 해친 것을 이유로 합리적 판단 하에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 밖의 행위에 대한 징계도 가능하다고 보았다.<sup>30)</sup>

---

30) *R.R. v. Board of Education of the Shore Regional High School District*, 109 N.J. Super, 337, 263 A.2d 180(1970)[Michael W. La Morte, *school law: cases and concepts*, third edition, Boston: Allyn and Bacon, 1990, pp.179~180.]

또 다른 사건에서 법원은 학생의 행위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학생의 규율 또는 학교의 일반적인 복지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갖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이유로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고 보았다.<sup>31)</sup>

결국 행위의 장소보다는 행위의 성격과 그 심각한 정도, 학교와 학교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이 징계의 정당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sup>32)</sup> 다만 교외의 폭력행위라 할지라도 인물확인도 하지 않고 학생의 증언만에 의하는 것은 처분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증거주의를 견지하려고 하고 있으며 교육적 적법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sup>33)</sup>

일본에서도 학교 밖의 행위에 대한 학교의 징계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로 오토바이 규제와 관련하여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sup>34)</sup> 이러한 가운데 학교의 감호책임이 미치는 범위는 제한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취지 하에 장소와 시간상으로 학교가 배타적으로 감독책임을 갖는 영역(학교수업 시간내 및 학교행사중의 행위)과 함께 학교 주변지구 및 통학로의 경우 학교시간 및 그 전후와 같이 학교의 감독책임이 미치는 시간에 한정할 것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sup>35)</sup>

우리의 경우 수집된 징계규정을 살펴보면 특별히 징계대상이 되는 행위를 학교 안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상당수의 학교에서 징계의 사유로서 '성행 불량으로 외부로부터 통보된 자'를 포함시키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학교 내외를 막론하고 학교징계권이 미치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다.

---

31) *Clements v. Board of Trustees of the Sheridan County School District No.2*, 585 P.2d 197(Wyo. 1978)[*Ibid*, p.180.]

32) *Ibid*, p.181.

33) 杉田 莊治 編著, 日米の判例にみる停學・退學をめぐる事例集, 學事出版, 1987, p.124.

34) 柿沼昌芳, “高校生活における生活指導と教育法: オートバイ規制問題”, 教育行政の動向と教育法, 有斐閣, 1983, pp.129~139.

35) 坂本 秀夫, 生徒懲戒の研究, 學陽書房, 1982, p.161.

실제로 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행위로 징계를 받는 일이 학교 안에서 발생한 행위로 징계 받는 일에 비해 비중이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학교에서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는 폭력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학교안과 밖으로 구분하여 상대적 비율에 질문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표 11> 비행이 발생하는 장소의 비율

구 분	전 체
1. 학교 안에서가 거의 전부	53 (13.2)
2. 학교 안에서가 많다	69 (17.2)
3. 학교 안과 밖의 거의 반반이다	83 (20.6)
4. 학교 밖에서 많다	141 (35.1)
5. 학교 밖에서가 거의 전부	56 (13.9)
계	402 (100)

즉, 학교 안에서 발생한 행위가 거의 전부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13.2%, 학교 안에서 발생한 행위가 많다고 응답한 경우는 17.2%로 합하여 30.4%에 불과하였지만, 학교 밖에서 발생한 행위가 많다고 응답한 경우는 35.1%, 학교 밖에서 발생한 행위가 거의 전부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13.9%로 합하여 49.0%에 달하였다. 그리고 학교안과 학교 밖의 행위가 거의 반반이다 라고 응답한 경우는 20.6%이었다. 따라서 학생징계의 공간적 규율대상은 학교 안과 학교밖에 모두 미치고 있으며 그 비율을 보면 학교 밖의 행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이미 다룬 대로 실제로 발생한 학생징계의 원인 행위로서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난 행위가 폭력, 금품갈취, 음주, 흡연, 절도



등 임을 고려하여 볼 때 학생징계의 주된 규율대상은 행위의 성질상 학교의 내부질서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행위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공간적으로도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 행위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학생징계는 학생들의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개인적 생활·활동에 대한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12> 학교 밖에서 발생한 비행에 대한 처벌

구 분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전체
1. 가중 처벌한다	64 [45.7] {32.3} (15.9)	54 [38.6] {45.4} (13.4)	22 [15.7] {25.9} (5.5)	140 (34.9)
2. 가볍게 처벌한다	8 [42.1] {4.0} (2.0)	3 [15.8] {2.5} (0.7)	8 [42.1] {9.4} (2.0)	19 (4.7)
3. 동일하게 처벌한다	118 [53.2] {59.7} (29.4)	57 [25.7] {47.9} (14.2)	47 [21.2] {55.3} (11.7)	222 (55.2)
4. 기 타	8 [38.1] {4.0} (2.0)	5 [23.8] {4.2} (1.2)	8 [38.1] {9.4} (2.0)	21 (5.2)
전 체	198	119	85	402
[ ]은 행 %      { }은 열 %      ( )은 전체 %				

이러한 공간적 현황과 함께 학교 밖에서 발생한 폭력행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는 질문을 한 결과, 전체의 55.2%가 학교 안에서 발생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학교 안에서 발생한 경우보다 가중처벌 한다는 경우가 34.9%이고, 학교 안에서 발생한 행위보다 가볍게 처벌한다는 경우는 4.7%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학교 밖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대하여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학교안과 밖의 행위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행위의 동질성에 기초하여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가중 처벌한다는 경우가 34.9%에 달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결과를 앞에서 다룬 학생징계의 공간적 준거에 따른 발생 비율과 관련지어 비교하면 학생징계는 공간적으로 학교 밖의 행위에 대한 규율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학교 밖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 가중 처벌한다는 경우가 34.9%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남자학교, 여자학교, 남녀공학 학교간에는 남자학교에서는 가중 처벌율(49.4%) 여자학교(52.3%)와 남녀공학 학교(59.6%)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3> 학교 밖에서 발생한 비행에 대한 처벌

구 분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전체
1. 가중 처벌한다	45 [32.4] {49.4} (11.2)	34 [24.4] {39.5} (8.5)	60 [43.2] {26.7} (14.9)	139 (34.6)
2. 가볍게 처벌한다	2 [10] {2.2} (0.5)	1 [5] {1.2} (0.2)	17 [85] {7.6} (4.2)	20 (5.0)
3. 동일하게 처벌한다	43 [19.4] {47.3} (10.8)	45 [20.2] {52.3} (11.2)	134 [60.4] {59.6} (33.3)	222 (55.2)
4. 기 타	1 [4.8] {1.1} (0.2)	6 [28.6] {7.0} (1.5)	14 [66.6] {6.2} (3.5)	21 (5.2)
전 체	91	86	225	402
[ ]은 행 %	{ }은 열 %	( )은 전체 %		

#### 4) 징계처분의 공고

학생징계의 억제효과를 겨냥하는 차원으로서 학생 징계처분의 공고를 들 수 있다. 위반행위로 징계를 받은 학생이 공고됨으로써 일반학생들에게 위반행위의 자제나 억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생징계가 결정되면 누구를 대상으로 공고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76.1%의 학교에

서 교직원과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공고한다고 응답했고, 교직원만을 대상으로 공고한다는 학교는 4.7% 그리고 공고하지 않는다는 학교는 7.5%이었다.

<표 14> 학생징계 공고의 대상

구 분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전체
1. 교직원	17 [89.4] {8.6} (4.2)	1 [5.3] {0.8} (0.2)	1 [5.3] {1.2} (0.2)	19 (4.7)
2. 교직원과 전체학생	133 [43.5] {67.2} (33.1)	99 [32.3] {83.2} (24.6)	74 [24.2] {87.0} (18.4)	306 (76.1)
3. 징계 해당학생	25 [59.5] {12.6} (6.2)	12 [28.6] {10.1} (3.0)	5 [11.9] {5.9} (1.2)	42 (10.5)
4. 공고하지 않음	21 [70.0] {10.6} (5.2)	5 [16.7] {4.2} (1.2)	4 [13.3] {4.7} (1.0)	30 (7.5)
5. 기타	2 [40.0] {1.0} (0.5)	2 [40.0] {1.7} (0.5)	1 [20.0] {1.2} (0.2)	5 (1.2)
전 체	198	119	85	402
[ ]은 행 %      { }은 열 %      ( )은 전체 %				

70%를 넘는 학교에서 학생징계의 공고를 통해 억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학교와 여학교, 인문계와 실업계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공고 방법으로는 보통 학교 게시판에 게시하여 학생들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 5) 징계의 공평성과 확실성

학교에서는 각 징계별로 침해이익이 작은 행위부터 큰 행위를 대응시켜 놓은 징계기준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침해이익이 큰 행위를 했을 경우 퇴학처분의 중한 처분을, 그 반대의 경우에는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처분을 내린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징계의 공평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사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중학교의 징계규정에는 무단 가출한자 공공시설물 집기류 파손한자는 특별 교육이고 무단결석 3회로 퇴학예고 후 계속 무단 결석한자는 퇴학이라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기준은 무단가출, 무단결석, 공공시설물, 집기류 파손 등을 엄히 다스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볼 수 있으나 너무 가혹해서 비현실적이다.

둘째, 학교의 징계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억울해하는 경우는 대략 세 가지경우이다. 1) 잘못이 없는데도 벌을 받는 경우이며 2) 남과 같이 잘못을 했는데 자기만 벌을 받는 경우이며 3) 사소한 잘못을 했는데 과중한 벌을 받는 경우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학생들이 가장 예민한 반응을 보인 것은 두 번째의 경우이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가장 빈번히 발생해서 그렇기도 하거니와 학생들이 교사의 선입견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가장 시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경우이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처벌과정이 요구된다.

다음 사례는 수업 중에 일어난 사안으로 징계의 공평성 문제가 제기 되었던 내용으로 매우 주목해야할 것이다.

▶ 교과담입의견

1998. 12. 21(월요일) 3교시 4교시 0000과목 시간에 6~8명 학생이 동전놀이를 했고, 김00군 신00군 김00군 등 4명은 화투놀이를 하다 적발이 되어 화투를 내놓도록 하였으나 모두 거부하고 누구의 물건인지 밝히지를 않아 4명 학생을 학생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 학생의견

1998. 12. 21 3교시 4교시 2학년 6반 0000과목 양00선생님 시간에 과제를 주면서 하라고 했다. 그러나 과제를 하는 학생은 5~6명 정도이고 나머지 학생들은 떠돌고, 4명은 화투놀이(섯다), 6~8명은 동전놀이(쌈치기 2팀), 3명은 선타기놀이, 4명은 카드놀이(홀라)를 했다. 그중 카드놀이 하던 학생들이 적발이 되어 카드를 압수 당했다. 그러던 중 박00군이 선생님 화투해 요 외치자 양00선생님이 화투친 학생들에게 화투를 내놓으라고 했지만 숨겨서 내놓지 않자 카드놀이, 동전놀이, 화투를 친 학생들을 학생부로 넘기겠다고 하여 이름을 적고가서는 화투친 학생만 학생부로 넘겼습니다.

▶ 학생부의견

교과담입선생님의 의견서를 접수하여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기 위하여 해당 학생들을 불러 진술서를 받아본 결과 학생들이 '왜 같은 시간에 같은 교실에서 화투하고, 쌈치기하고, 선타기하고, 홀라를 했는데 우리만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항의를 하여 사실을 조사 해본 결과 학생들 의견이 옳아 해당 학생들을 징계 처리하지 않기로 하고 학생부에서 지도하여 마무

리하였다.

징계의 공평성을 알아보기 위해 징계의 가중사유로서 고려되는 것을 2가지 선택하도록 한 결과 징계 받은 경험이 33.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위반행위의 파급효과(20.1%), 반성의 뜻이 없거나 부족한 것(13.9%), 위반행위가 학교질서를 크게 해친 사실(11.8%), 위반행위의 질(8.8%), 고의성이 강한 행위(8.2%), 순위였다. 징계 받은 경험에 대하여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은 이전에 이미 징계를 하여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학교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데에 대한 비난과 재발했기 때문에 다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염려가 담겨있는 것이다.<sup>36)</sup> 또한 고의성과 반성의 뜻 부족은 모두 학생으로서 가져야 할 도의의 위반이라는 비난을 담고 있다.

<표 15> 징계규정보다 가중하여 처분을 하는 경우

구 분	전 체 ( ) : %
1. 징계 받은 경험	271(33.7)
2. 고의성이 강한 행위	66 (8.2)
3. 평소 좋지 않은 생활태도	27 (3.5)
4. 반성의 뜻이 없는 경우	112 (13.9)
5. 학교질서를 크게 해친 사실	95 (11.8)
6. 파급효과가 큰 상황	162 (20.1)
7. 질이 나쁜 것	71 (8.8)
계	804 (100)

이에 비해 학교의 질서나 파급효과는 주로 객관적 질서나 평온한 상황의

36) 정성근, 형법총론, 법지사, 1983, p.562 참조.

파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위반행위의 질은 심리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아울러 포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하여 보면 심리적인 측면의 비난가능성과 객관적인 측면의 위험이 바로 징계 가중 판단의 바탕에 깔려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증거에 입각하여 용보의 공평 여부가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평가는 규범적인 것은 아니다. 심리적 측면에는 다시 행위 이전의 측면(고의성)과 행위 이후의 측면(반성의 뜻)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런가하면 학생징계는 용보의 측면이 강하다. 용보의 측면이란 침해이익에 비례하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공평을 이루고 원한을 푸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용보의 확실성이 중요하다. 학생징계에서 용보의 의미가 강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반드시 징계를 받는다는 확실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에서는 징계요건에 해당하는 폭력행위를 한 학생을 발견했거나 인지한 경우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을 받는가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80~100% 처벌을 받는다는 경우는 21.1%, 60~80%라는 경우는 24.4%, 40~60%라는 경우는 24.9%이고, 40%이내인 경우는 29.6%에 해당하였다. 6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대체적으로 학교의 '필벌'의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높지 않은 것은 학생징계에서 용보의 공평성을 평가하는 바탕으로서 심리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이 공존하고 있으며, 심리적 측면에는 행위 이전의 측면(고의성)과 행위 이후의 측면(반성의 뜻)이 모두 중요시되고 있는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즉, 객관적 측면만이 존재한다면 징계의 확실성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지만 심리적 측면이 개입됨으로써 그 수치를 떨어뜨린 것으로 보인다.



<표 16> 비행 학생을 발견했거나 인지한 경우

구 분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전 체
1. 80~100% 처벌	25 [29.4] {12.6} (6.2)	33 [38.8] {27.7} (8.2)	27 [31.8] {31.8} (6.7)	85 (21.1)
2. 60~80% 처벌	46 [46.9] {23.2} (11.4)	32 [32.7] {26.9} (8.0)	20 [20.4] {23.5} (5.0)	98 (24.4)
3. 40~60% 처벌	49 [49.0] {24.7} (12.2)	31 [31.0] {26.1} (7.7)	20 [20.0] {23.5} (5.0)	100 (24.9)
4. 20~40% 처벌	48 [65.7] {24.2} (11.9)	14 [19.2] {11.8} (3.5)	11 [15.1] {12.9} (2.7)	73 (18.2)
5. 0~20% 처벌	30 [68.2] {15.2} (7.5)	9 [20.4] {7.6} (2.2)	7 [11.4] {8.3} (1.7)	46 (11.4)
전 체	198	119	85	402
[ ]은 행 %      { }은 열 %      ( )은 전체 %				

6) 징계의 경감사유

학생징계를 결정할 때에 징계의 경감사유로서 어떤 사항을 고려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징계의 목적으로서 선도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징계규정에서 정한 처분보다 경감하여 처분을 결정하는 사유로서 주로

많이 고려하는 것을 두 가지만 선택하도록 요구하였다.

질문에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든 학교는 31.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학급담임이나 학부모의 철저한 지도의지를 든 학교는 21.0%, 평소의 좋은 생활태도 19.0%, 초범인 경우 8.6 %, 징계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황 7.5%,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학생 자신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형편 6.1% 등으로 나타났고, 행위의 파급효과가 비교적 작은 상황이나 포상을 받은 경험도 몇몇 학교에서 선택하였다. 학교별로 징계규정보다 경감하여 처벌하는 경우 중학교에서는 깊이 반성하는 태도(41.9%), 인문계고등학교에서는 평소에 좋은 생활태도(27.1%) 실업계고등학교는 담임이나 학부모가 철저히 지도하겠다는 의지(29.8%)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보면, 지도가 가능한 경우에는 가급적 징계는 지양해야 한다는 관념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점은 징계규정이나 징계담당 위원회의 명칭에서 나타난 선도의 강조가 바로 징계를 통한 선도(지도활동)를 주로 겨냥하기보다는 선도 가능한 학생에게는 징계를 지양한다는 뜻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다. 철저한 지도의지, 초범, 반성의 뜻, 평소의 좋은 생활태도는 서로 그 의미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선도가능성으로 모아지며 이들 항목이 경감사유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징계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는 학교가 7.5%에 달하고 있는데, 이것은 징계에는 특별지도 프로그램이 병행한다고 할지라도 징계 자체가 선도나 개선과 부합되지 않는 본질적인 요소를 담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아가 상황에 따라서는 개선보다는 징계를 통해서 부정적인 행동만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현실인식을 깔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가출의 경우를 예로 들어 위반행위의 원인에 대한 학교의

통제권 부족으로 선도의 한계를 언급했다. 이것을 열악한 가정환경의 고려라는 경감사유와 연결 지어 고찰하면,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학생에게만 돌릴 만한 귀책사유가 부족한 경우가 있음을 뜻하고, 결국 징계를 통한 선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을 비교하면 남자학교는 담임이나 학부모가 철저히 지도하겠다는 의지(29.1%)가 여자학교, 남녀공학에서는 깊이 반성하는 태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7> 징계규정 보다 경감하여 처분을 결정하는 경우

구 분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전체
1. 초범인 경우	37 [53.6] {10.0} (4.7)	17 [24.7] {7.4} (2.2)	15 [21.7] {7.3} (1.9)	69 (8.6)
2. 깊이반성하는태도	155 [60.8] {41.9} (18.8)	51 [20.0] {22.3} (7.5)	49 [19.2] {23.9} (6.3)	255 (31.7)
3. 평소에 좋은 생활태도	49 [32.0] {13.2} (7.5)	62 [40.5] {27.1} (6.6)	42 [27.5] {20.5} (5.4)	153 (19.0)
4. 학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형편	20 [40.8] {5.4} (2.6)	18 [36.7] {7.9} (2.3)	11 [22.5] {5.4} (1.4)	49 (6.1)
5.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	27 [45.0] {7.3} (3.4)	17 [28.3] {7.4} (2.2)	16 [26.7] {7.8} (2.0)	60 (7.5)
6. 담임이나 학부모의 지도의지	64 [37.9] {17.3} (10.7)	44 [26.0] {19.2} (5.6)	61 [36.1] {29.8} (5.2)	169 (21.0)
7. 파급효과가 작은 상황	17 [41.4] {4.6} (2.2)	15 [36.6] {6.6} (1.9)	9 [22.0] {4.4} (1.1)	41 (5.1)
8. 포상 받은 경험	1 [12.5] {0.3} (0.1)	5 [62.5] {2.2} (0.6)	2 [25.0] {1.0} (0.3)	8 (1.0)
전 체	370	229	205	804
[ ]은 행 %	{ }은 열 %	( )은 전체 %		

<표 18> 징계규정 보다 경감하여 처분을 결정하는 경우

구 분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전 체
1. 초범인 경우	12 [17.4] {6.7} (1.5)	15 [21.7] {9.1} (1.9)	42 [60.9] {9.1} (5.2)	69 (8.6)
2. 깊이반성하는태도	49 [19.3] {27.4} (6.1)	56 [22.0] {33.9} (7.0)	149 [58.7] {32.4} (18.5)	254 (31.6)
3. 평소에 좋은 생활태도	32 [20.5] {17.9} (4.0)	28 [18.0] {17.0} (3.5)	96 [61.5] {20.9} (11.9)	156 (19.4)
4. 학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형편	10 [20.8] {5.6} (1.2)	15 [31.3] {9.1} (1.9)	23 [47.9] {5.0} (2.9)	48 (5.9)
5.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	9 [15.0] {5.0} (1.1)	10 [16.7] {6.1} (1.2)	41 [68.3] {8.9} (5.1)	60 (7.5)
6. 담임이나 학부모의 지도의지	52 [30.8] {29.1} (6.5)	30 [17.7] {18.2} (3.7)	87 [51.5] {18.9} (10.8)	169 (21.0)
7. 파급효과가 작은 상황	13 [31.7] {7.3} (1.6)	9 [22.0] {5.5} (1.1)	19 [46.3] {4.1} (2.4)	41 (5.1)
8. 포상 받은 경험	2 [28.6] {1.1} (0.2)	2 [28.6] {1.1} (0.2)	3 [42.8] {0.7} (0.4)	7 (0.9)
전 체	179	165	460	804
[ ]은 행 %    { }은 열 %    ( )은 전체 %				

## 7) 특별지도 프로그램 현황

학생징계규정을 살펴보면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한 지도뿐만 아니라 징계가 만료된 학생의 지도를 위해서도 학교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학생부나 진로상담부를 통해 특별지도계획이나 별도의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학교도 있다. 이에 관한 사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 징계 받는 학생의 지도

- ① 수시 선도 : 학생부장교사는 학교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학생선도대장에 기록하여 수시 선도에 임한다.
- ② 상담교사의 사후 지도 : 징계 의결된 학생은 상담교사를 지정 사후 선도를 담당하게 하여 선도의 효과를 높이게 한다.
- ③ 결연 교사 지정 : 필요에 따라 결연 교사를 지정하여 특별 상담지도를 한다.
- ④ 수업노트 필기 : 그날 매시간 수업한 수업노트를 빌려 귀가 전에 필기를 다하게 한다.
- ⑤ 특별지도 계획 수립 : 학생부에서는 특별지도를 위한 교육계획을 별도로 수립한다.
- ⑥ 교육계획 수립 : 학생부는 징계를 받은 학생을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 ▶ 징계 만료된 학생의 추수지도

- ① 담임교사의 추수지도 : 담임교사는 징계가 만료된 학생에 대하여 면담, 관찰, 과제 부과 등의 추수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지도한다.
- ② 교사-학생 결연 지도 : 학교장은 징계기간 만료, 조정, 해제된 학생

에게 담임교사 외에 진로상담부 교사 또는 비담임교사 중 1인을 지정하여 1교사 1학생 결연을 맺도록 함으로써 개별지도를 하도록 한다.

- ③ 사후지도 철저 : 징계가 완료된 학생에게 담임교사 외 1인의 상담교사를 지정하여 개별 상담토록 하여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징계학생의 사후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한다.

- ④ 개별지도 : 학교장은 징계 해제된 학생에게 담임교사 외 1인의 교사를 지정하여 개별 지도토록 한다.

그런데 학생징계규정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특별지도의 내용으로 반성문 작성, 특별과제물 작성, 봉사활동의 3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학교에 따라 노력봉사, 진로상담, 체력단련, 독서지도, 상담지도, 인성지도, 자습, 교우관계 재조정, 결심문 작성 등을 부가하고 있다.

반성문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반성하고 회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학교는 반성문의 요건을 징계규정에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sup>37)</sup> 특별과제물은 보통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을 통해 수업관련 과제를 부과하는 것이고, 봉사활동은 보통 청소나 노작 등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3가지 활동을 주축으로 한 지도를 전제로 한다면 징계받은 원인행위별 지도나 학생의 선도를 위한 적극적인 지도로서는 충분하지 못

---

37) K 고교에서는 반성문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범칙 사실의 솔직한 고백과 반성
- 매일 생활계획과 반성
- 수업시간중의 학습에 대한 반성
- 매일 학교 및 가정에서 협조한 일
- 담임교사, 전담 선도위원의 지도를 받아 깊이 감명하고 깨달은 점
- 매일 생활 감정의 표현
- 반성문은 300자 이상의 작문으로 작성하되 형식적이고 동일한 내용의 반복은 인정 하지 않는다.

하며, 오히려 학생 자신의 자발적인 회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학생징계의 목적으로서 '개선'은 징계를 통해 학생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데서 의미를 가질 뿐 학교의 적극적인 개선활동이 이루어지는 데서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반성문이나 반성일기를 쓰게 하는 일 외에 학생에 대한 특별지도 프로그램은 준비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준비되어 있다는 응답에 중학교는 44.9%, 인문계고등학교는 48.7%, 실업계고등학교는 57.6%로 전체적으로 48.8%로 나타났지만, 매우 잘 준비되어 있다는 학교는 1.7%에 불과하고 그저 그렇다는 학교나 준비되어 있지 않다 혹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학교가 49.5%에 달하였다.





<표19>비행학생에 대한 특별지도 프로그램 준비

구 분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전 체
1. 매우 잘 준비되어 있다	2 [28.6] {1.0} (0.5)	3 [42.8] {2.5} (0.7)	2 [28.6] {2.4} (0.5)	7 (1.7)
2. 준비되어 있다	89 [45.4] {44.9} (22.1)	58 [29.6] {48.7} (14.4)	49 [25.0] {57.6} (12.2)	196 (48.8)
3. 그저 그렇다	61 [55.4] {30.8} (15.2)	29 [26.4] {24.4} (7.2)	20 [18.2] {23.5} (5.0)	110 (27.4)
4. 준비되어 있지 않다	39 [50.0] {19.8} (9.7)	27 [34.6] {22.7} (6.7)	12 [15.4] {14.1} (3.0)	78 (19.4)
5. 전혀 준비된 것이 없다	7 [63.6] {3.5} (1.7)	2 [18.2] {1.7} (0.5)	2 [18.2] {2.4} (0.5)	11 (2.7)
전 체	198	119	85	402
[ ]은 행 %	{ }은 열 %	( )은 전체 %		

특별지도 프로그램 준비에 관해서 일선 학교 학생부장 및 학생부 선생님들과 면담해 본 결과 대다수의 학교가 많은 수업시간과, 막중한 업무 그리고 출장, 연수로 학생을 지도하기에 부적절한 여건 때문에 징계학생의 지도가 활발하지 않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은 다른 여느 학교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교가 다분히 형식적인 선도에 그치고 있어 이를 보완하여 손이 미치지 않는 학생들에게 위탁교육할 만한 외부 프로그램이 있어야한다. 즉 많은 학교에서 특별지도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미흡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남학교와 여학교, 남녀공학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지만, 그저그렇다에 응답한 경우는 27.1%, 준비되어 있지않다에 응답한 경우는 19.4%, 전혀 준비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는 2.7%로 합하여 49.2%에 달하고 있어 학교내의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표20>비행학생에대한특별지도프로그램준비

구 분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전 체
1. 매우 잘 준비되어 있다	1 [12.5] {1.1} (0.2)	1 [12.5] {1.2} (0.2)	6 [75.0] {2.7} (1.5)	8 (2.0)
2. 준비되어있다	48 [24.5] {52.7} (11.9)	40 [20.4] {46.5} (10.0)	108 [55.1] {48.0} (26.9)	196 (48.8)
3. 그저 그렇다	13 [11.9] {14.3} (3.2)	25 [23.0] {29.1} (6.2)	71 [65.1] {31.5} (17.7)	109 (27.1)
4. 준비되어 있지 않다	28 [35.9] {30.8} (7.0)	19 [24.4] {22.1} (4.7)	31 [39.7] {13.8} (7.7)	78 (19.4)
5. 전혀 준비된 것이 없다	1 [10.0] {1.1} (0.2)	1 [10.0] {1.2} (0.2)	9 [80.0] {4.0} (2.2)	11 (2.7)
전 체	91	86	225	402
[ ]은 행 %	{ }은 열 %	( )은 전체 %		

## VII. 要約 및 結論

### 1. 要約

본 연구는 제주도의 학생비행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학생비행에 대한 학교 또는 교사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학생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또 학교와 학교주변 비행의 현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러한 학생비행에 대한 전통적인 대처방안의 하나로서 학교 또는 교사들이 익히 사용했던 해결전략인 학생징계에 대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도내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학생부 담당교사들에게 질문지를 만들어 500부를 배포하여 그 중 451부를 회수하고 성실하게 답변한 402부만 SPSS프로그램에 의존하여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특히 사례를 중심으로 학생들과의 면담, 관계기관 방문, 학생부 교사들과 면담 등의 내용을 그대로 밝혀 학생비행의 현실을 보다 생동감 있게 전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제주도내 학생비행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행위는 폭력(27.7%)이며 다음으로 금품갈취(18.7%), 흡연(16.3%), 절도(12.0%), 음주(9.0%), 가출(6.0%), 유해업소출입(4.9%), 따돌림(3.4%), 환각물질 흡입 및 복용(2.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경험하고 있어 중학교에서의 학교 비행의 심각성에 주목해야할 것이다.

(2)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는 폭력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학교 안과 밖으로 구분하여 상대적 비율에 질문한 결과 학교 안에서 발생한 행위가 거의 전부라고 응답한 경우는 13.2%, 학교 안에서 발생한 행위가 많다고 응답한 경우는 17.2%로 합하여 30.4%에 불과하였지만, 학교 밖에서 발생한 행위가 많다고 응답한 경우는 35.1%, 학교 밖에서 발생한 행위가 거의 전부라고 응답한 경우는 13.9%로 합하여 49.0%에 달하였다. 따라서 학생징계의 공간적 규율 대상은 학교 안과 학교 밖에 모두 미치고 있으며 그 비율을 보면 학교 밖의 행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 학교 밖에서 발생한 폭력행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냐는 질문에 전체의 55.2%가 학교 안에서 발생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4) 징계의 공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징계의 가중 사유로 고려되는 것을 2가지 선택하도록 요구한 결과 징계 받은 경험이 33.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위반 행위의 파급효과(20.1%), 반성의 뜻이 없거나 부족한 것(13.9%), 위반행위가 학교 질서를 크게 해친 사실(11.8%), 위반행위의 질(8.8%), 고의성이 강한 행위(8.2%), 평소의 좋지 않은 생활태도(3.5%) 순으로 나타났다.

(5) 폭력행위를 한 학생을 발견했거나 인지한 경우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을 받느냐는 질문에 80~100% 처벌을 받는다는 경우는 21.1%, 60~80%라는 경우는 24.4%, 40~60%라는 경우는 24.9%이고, 40%이내인 경우는 29.6%에 해당하였다. 6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대체적으로 학교의 '필벌'의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6) 징계규정에서 정한 처분보다 경감하여 처분을 결정하는 사유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든 학교는 31.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별로는 중학교에서는 깊이 반성하는 태도(41.9%), 인문계고등학교에서는 평소에 좋은 생활태도(27.1%) 실업계고등학교는 담임이나 학부모가 철저히 지도하

겠다는 의지(29.8%)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보면, 지도가 가능한 경우에는 가급적 징계는 지양해야 한다는 관념이 깔려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반성문이나 반성일기를 쓰게 하는 일 외에 학생에 대한 특별지도 프로그램은 준비되어 있는냐는 질문에 대하여 준비되어 있다는 응답에 중학교는 44.9%, 인문계고등학교는 48.7%, 실업계고등학교는 57.6%로 전체적으로 48.8%로 나타났지만, 매우 잘 준비되어 있다는 학교는 1.7%에 불과하고 그저 그렇다는 학교나 준비되어 있지 않다 혹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학교가 49.5%에 달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교가 다분히 형식적인 선도에 그치고 있어 이를 보완하여 손이 미치지 않는 학생들에게 위탁교육할 만한 외부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겠다.

## 2. 結論



제주도내 중등학교의 학생비행에 대한 학교의 징계 현황을 밝히기 위한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조사 분석된 자료를 종합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들의 비행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며, 학교 안에서의 비행장소는 교실, 화장실, 운동장, 매점 등으로 특정 장소가 아니며, 가해 상대방도 같은 학교 학생으로 평범한 학생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 비행이 특정한 장소, 특정한 부류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행 예방에 힘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2) 학생비행이 발생했을 때 일선 학교 교사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전략이 가능하리라 믿었으나 놀랍게도 학생징계가 일반적인 해결전략으

로 차용되고 있었고, 학생들이 문제행동을 일으켰을 경우 각 학교는 학칙에 따라 거의 유사한 절차에 따라 처벌하고 사후 지도를 하고 있어 선도차원보다는 처벌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이를 근거로 제정된 징계 규정이 학교마다 서로 달라 징계를 당하는 학생간에 불평등이 존재하고 해석하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징계 규정의 분류에 있어 유사한 문제행동을 세분화시켜 나열하고 있다. 징계규정을 세분화할 때 학생들이 문제행동 범위가 커져 징계대상 학생이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징계 규정 제정시 다각도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4) 학생징계는 직접적인 불이익으로서 수업정지와 간접적 불이익인 낙인 효과를 발생함으로써 이중의 불이익을 낳는다. 그럼에도 징계 받은 학생의 선도·개선을 위한 지도는 매우 취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또한 학생징계는 학교의 포괄적 재량권에 기초하여 운용되고 있지만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법절차의 장치는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징계결정 과정에서 변론권을 인정하는 학교는 현실적으로 매우 드문 형편이었다.

5) 학교 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징계는 학교 내 봉사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처분 순이며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학생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탁교육을 해야 하는데 상당수 학교가 하지 않고 있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위배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한다.

첫째, 학생들 사이에 보편화된 학생비행 문제를 단시일에 해결하기는 어렵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처벌 위주 해결방식에서 벗어나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 안에서 건전한 또래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보다 교육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요구되어진다.

둘째, 엄정해야 할 징계기준표가 학교마다 다르게 되어 있어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행동의 경중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입각해 징계를 결정하는 일이 시급하다.

셋째, 징계위원들이 아무리 공정하게 벌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함에도 현행 학생 징계제도에는 이러한 제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소원위원회를 징계위원회와는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고 본다.

넷째,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은 부장교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징계 받을 학생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학생부의 사건 개요 설명과 담임선생님의 참고 발언에 의해서 사건을 판단한다. 물론 이런 방법이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하게 사건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말로만 듣던 때하고 사건 당사자를 직접 접했을 때의 상황 판단은 많은 차이가 있다. 징계위원회에 학생의 진술을 허용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 억울한 판단을 줄일 수 있고 비록 같은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학생피의자에게는 최선을 다했다는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생 진술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탐라교육원, 학생문화원, 청소년수련원에서는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처분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겠다.

## 參 考 文 獻

- 강세현, “선택적 낙인과정에 관한 비행에 관한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4.
- 강원근, “학교의 상벌실태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79.
- 교육부, 『대법원 교육판례집』, 1993, p.35.
- 권오철, “고등학교 학생징계에 관한 연구”,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1981.
- 김교정, “고등학교의 상벌에 관한 조사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1985.
- 김낙운, 『현행 교육법해설』, 서울 : 하서출판사, 1986, p.280.
- 김동선, “고등학교 학생들의 상벌에 관한 조사연구”, 원광대 석사학위논문, 1987.
- 김성기, “학생체벌에 관한 교사 재량권의 근거와 한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4.
- 김준호, “사회학 분야에서의 청소년비행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청소년연구, 제1권 제1호, 한국청소년연구원, 1990, pp.18~33.
- 문용린·김기석, 비행화와 관련된 고등학생들의 문화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87.
- 박종만, “고등학교 학생징계규정의 적법절차와 형평성”,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1994
- 박종삼 외, 청소년가출의 예방과 대처방안, 한국청소년연구원, 1992.
- 송광성·구정화, 정학·퇴학 청소년 선도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4권 제4호, 한국청소년개발원, 1993, pp.80~99.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학교폭력에 관한 조사연구(1996~1997), 1998.
- 이경운, “대학생의 법적 지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pp.159.
- 이길홍, “정신의학 분야에서의 청소년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청소년연구, 제1권 제2호, 한국청소년연구원, 1990, pp.33~48.
- 이완정, 행동연구 분석기법, 교육과학사, 1996,
- 이장남, “학생징계규정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1981.
- 이홍우, 교육의 개념, 문음사, 1992.



- 장수한, “상당사례 분석을 통한 청소년 가출의 원인과 대책”,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1993.
- 전재경, 미국적법질차론, 법무자료 제130집, 법무부, 1990.
- 정상배, “낙인과 애착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3.
- 최인화·김두정, “학생처벌규정; 법리, 문제점, 개선방향”, 한국청소년연구, 제5권 제2호, 한국청소년연구원, 1994, pp.25~42.
- 천정웅·김경준·김재홍, “청소년관계 법령 및 제도보완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4권 제3호, 한국청소년연구원, 1993, pp.80~95.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소식」, 제39호, 1996.
- 한준상, “교육학분야에서의 청소년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청소년연구, 제1권 제1호, 한국청소년연구원, 1990, pp.5~17.
- 황용연 박사 퇴임기념논문 논총위원회, 현대사회와 청소년지도, 배영사, 1995.
- 今村武俊·別府 哲, 「學校教育法解説」(初中等教育編), 田中重彌, 1968, pp.345~380.
- 牧 枉明 外, 懲戒·體罰の法制と實態, 學陽書房, 1992.
- 杉田 莊治 編著, 日米の判例にみる停學·退學をめぐる事例集, 學事出版, 1987.
- 柿沼昌芳, “高校生活における生活指導と教育法: オートバイ規制問題”, 日本教育法學會, 教育行政の動向と教育法, 有斐閣, 1983, pp.129~139.
- 齋藤浩志, “學習權保障と生活指導”, 八〇年代教育法學の展望, 有斐閣, 1981, pp.64~72.
- Apple, Michael W., “School Discipline: Why Simple Solutions Are No Solutions At All”, *The High School Journal*, Vol.68 No.1, Chapel Hill, North Carolina: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4, pp.6~9.
- Chandler, Gary L., “Due Process Rights of High School Students”, *The High School Journal*, Vol.75 No.3, Chapel Hill, North Carolina: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2, pp.137~143.
- Fischer, Thomas C., “From Tinker to TLO: Are Civil Rights For Students ‘Flunking’ in School?”, *Journal of Law & Education*, Vol.22 No.4, Cincinnati, Ohio: Jefferson Law Book Company, Division of Anderson

- Publishing Co., 1992, pp.409~422.
- Grusky, Oscar, and Miller, George A., ed., *The Sociology of Organizations*, 2nd edition, New York: A Division of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81.
- Hamm, Cornel M., *Philosophical Issues in Education: An Introduction*, New York: The Falmer Press, 1989.
- Hurlbert, E. L. and Hurlbert M. A., *School Law Under the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Canada Alberta: The University of Calgary Press, 1989.
- Morte, Michael W. La, *school law; cases and concepts*, third edition, Boston: Allyn and Bacon, 1990.
- Nice, David, *Education and the law*, Councils and Education Press, 1986.
- Milman, D., *Educational Conflict and the Law*, London: Croom Helm, 1986.
- Moles, Oliver C. ed., *Student Discipline Strategie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0.
- Ornstein, Allan C., "An Update of Student Rights", *The High School Journal*, Vol.64 No.2, Chapel Hill, North Carolina: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0, pp.60~64.
- Peters, R. S. ed., *The Philosophy of Educ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 Peters, R. S., *Ethics and Education*,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66.  
이홍우 역, 윤리학과 교육, 교육과학사, 1980.
- Remmlein, Madaline K., *School Law*, second editon, Danville, Illinois: The Interstate Printers & Publishers, Inc., 1962.
- Roberts, A. R., *Runaways and Non-Runaways*, Chicago: The Dorsey Press, 1987. 나동석·이용교 옮김, 가출청소년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1991.
- Rubin L. ed., *Critical Issues in Educational Policy*, Boston: Allyn and Bacon, Inc., 1980.
- Schimmel, David & Williams, Richard, "Does Due Process Interfere With

School Discipline?" , *The High School Journal*, Vol.68 No.1, Chapel Hill, North Carolina: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5, pp.47~51.

Sergiovanni, Thomas J. et. al., *Educational Governance And Administration*,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80.

Stradley, William E. & Aspinall, Richard D., *Discipline in the Junior High/ Middle School: A Handbook for Teachers, Counselors, and Administrators*, New York: The Center for Applied Research in Education, Inc., 1975.

Strike, Kenneth A., *Educational Policy and the Just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2.

Van Scotter, Richard D. et. al., *Social Foundations of Education*, second edition,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85.

Yudof, Mark G. et. al., *Educational Policy and the Law*, Third Edition, St. Paul: West Publishing Company, 1992.



[Abstract]

**An Analysis on Disciplinary Punishment Conditions  
about Students' Delinquency in Schools  
— chiefly in secondary schools of Cheju-do —**

**Kim, Jang-yung**

**Educational Administr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Jin-geon**

This thesis aims to supply a place for debating on the disciplinary punishments that schools or teachers have inflicted on delinquent students, through analyzing disciplinary punishment conditions about students' delinquency. The following research subjects are established in order to accomplish this purpose.

- 1) What are the actual conditions of students' delinquency?
- 2) What kinds of patterns are there in disciplinary punishments?
- 3) What are the conditions of disciplinary punishments?
- 4) How are the disciplinary punishments inflicted in schools?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0.

For the purpose of solving these research subjects, the writer made questionnaire surveys of students' delinquency and disciplinary punishments on 402 teachers in the student affairs section of 39 middle schools and 28 high school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tudents' delinquency happens almost in the remote places in schools quiet classrooms, rest rooms, playgrounds, school stalls, the empty lots behind schoolhouses, etc. In addition, wrongdoers are almost common students in the same schools.

Second, students' delinquency which have been exposed most frequently in Cheju-do is violence, which is followed by money extortion, smoking, theft, drinking, disappearance from home, frequenting prejudicial resorts, cutting off a classmate from others. In particular, middle school students suffer from these wrongdoing more than high school students, which shows us the seriousness of delinquency in the middle schools and demands us much more attention.

Third, the disciplinary punishment patterns, on the basis of Section 31 of Enforcement Ordinance in the Education Law, are composed of labor service in schools, social service, special training, and withdraw from schools. However, the standards of disciplinary punishments are not only different in each school but also inconsistent in most schools.

Fourth, the most frequent punishment which secondary schools in Cheju-do have inflicted on wrong students is labor service in schools, which is followed by social service, special training, and withdraw from schools.

Fifth, the cooperation with communities is indispensable to inflicting the punishment of social service and special training. Of course, most vocational high schools get cooperation from communities, but academic high schools and middle schools don't do so.

Sixth, the writer believed that schools and teachers have various technologies about students' delinquency at first. However, I am surprised to find that there are no other particular technologies for

guiding students than disciplinary punishments.

As I have said above, the proper guidance of students in schools has a strong bias in disciplinary punishment. Under the condition that there are little living and learning guidance in schools for the prevention of wrong-doing, it is not too much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disciplinary punishments about students' wrongdoing are all that schools can do for guiding students. Of course, we don't deny that the punishment itself act as one method of guidance. Nevertheless, we try to make punished students reflect on their conduct and have the determination of not repeating such a wrongdoing. So, from now on, our schools and teachers have to make great efforts to root out students' wrongdoing from schools with strong patience and generous tolerance.



# 설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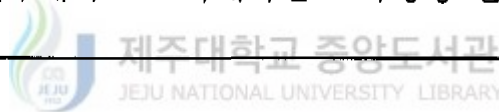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발전에 전념하시는 선생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주도의 학생징계 실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답내용은 연구 자료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심껏 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지에서 말하는 징계란 학생징계에 관련된 규정에 따른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처분 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2000. 3.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연구실



※ 해당하는 항목을 플라 ( ) 안에 V 표시를 하거나 적당하게 적어 주십시오.

1. 선생님께서 재직하고 계시는 학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 1) ① 중학교( ) ② 인문계 고등학교( ) ③ 실업계 고등학교( )
- 2) ① 남학교( ) ② 여학교( ) ③ 남녀공학( )
- 3) ① 국·공립( ) ② 사립( )

2. 학교 밖에서 발생한 폭력행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 ) ① 학교 안에서 발생한 행위보다 가중 처벌한다.
- ( ) ② 학교 안에서 발생한 행위보다 가볍게 처벌한다.
- ( ) ③ 학교 안에서 발생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 ) ④ 기타

3. 징계 대상이 되는 폭력행위를 학생이 실행에 옮기려 하였으나 도중에 그만둔 경우(미수에 그친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 ( ) ① 처벌하지 않는다.                      ( ) ② 처벌하지만 경감(輕減)한다.  
( ) ③ 실제로 실행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 ) ④ 행위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한다.                      ( ) ⑤ 기타

4. 폭력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해 학생의 진술에 어느 정도 의존합니까?

- ( ) ① 거의 완전히 의존한다.  
( ) ② 의존한다.                      ( ) ③ 그저 그렇다.  
( ) ④ 거의 의존하지 않는다.                      ( ) ⑤ 전혀 의존하지 않는다.

5. 징계요건에 해당하는 폭력행위를 한 학생을 학생부에서 발견했거나 인지한 경우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됩니까?

- ( ) ① 80~100 %                      ( ) ② 60~80 %                      ( ) ③ 40~60 %  
( ) ④ 20~40 %                      ( ) ⑤ 0 ~20 %

6. 징계규정에서 정한 처분보다 가중하여 처분을 결정하는 사유로서 주로 많이 고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 ) ① 징계를 받은 경험  
( ) ② 고의성이 강한 행위  
( ) ③ 평소의 좋지 않은 생활태도  
( ) ④ 반성의 뜻이 없거나 부족한 것  
( ) ⑤ 위반행위가 학교의 질서를 크게 해친 사실  
( ) ⑥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큰 상황  
( ) ⑦ 위반행위의 질이 나쁜 것                      ( ) ⑧ 기타



7. 징계규정에서 정한 처분보다 경감(輕減)하여 처분을 결정하는 사유로서 주로 많이 고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 ) ① 초범인 경우
- ( ) ② 깊이 반성하는 태도
- ( ) ③ 평소의 좋은 생활태도
- ( ) ④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학생자신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형편
- ( ) ⑤ 징계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황
- ( ) ⑥ 학급담임이나 학부모가 철저히 지도하겠다는 의지
- ( ) ⑦ 행위의 과급효과가 비교적 작은 상황
- ( ) ⑧ 포상을 받은 경험 ( ) ⑨ 기타

8. 징계심의 전에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까?

- ( ) ① 적극적으로 그렇다.
- ( ) ② 비교적 그런 편이다.
- ( ) ③ 그저 그렇다.
- ( ) ④ 그렇지 못하고있다.

9. 징계위원회에서 주로 많이 토론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 ) ① 정확한 사건 개요
- ( ) ② 실제 징계 여부
- ( ) ③ 징계의 가중 사유나 경감(輕減) 사유의 존부와 그 평가
- ( ) ④ 징계의 효과
- ( ) ⑤ 징계의 대상 행위가 미친 영향 또는 앞으로 미칠 영향
- ( ) ⑥ 징계처분 이외에 학교의 후속 대책
- ( ) ⑦ 기타( )


10. 학생징계가 결정되면 누구를 대상으로 공고합니까?

- ( ) ① 교직원 ( ) ② 교직원과 전체 학생 ( ) ③ 징계 해당학생  
( ) ④ 공고하지 않음

11. 폭력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반성문이나 반성일기를 쓰게 하는 일 외에 학생에 대한 특별지도 프로그램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 ( ) ① 매우 잘 준비되어 있다.  
( ) ② 준비되어 있다.  
( ) ③ 그저 그렇다.  
( ) ④ 준비되어 있지 않다.  
( ) ⑤ 전혀 준비된 것이 없다.

12. 폭력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의 지도는 잘 되고 있습니까?

- ( ) ① 매우 잘 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 ) ② 잘 되는 편이다.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 ③ 그저 그렇다.  
( ) ④ 안 된다.  
( ) ⑤ 전혀 안 된다.

13. 학생징계의 대상이 되는 폭력행위로서 귀 학교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지도하고 있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 ) ① 타인 구타  
( ) ② 집단폭행  
( ) ③ 공공시설물 집기류 파손  
( ) ④ 흉기사용

14. 귀 학교에서 처리한 징계처분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징계대상 행위는 무엇입니까? 3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 ) ① 폭력      ( ) ② 흡연      ( ) ③ 음주      ( ) ④ 금품갈취  
( ) ⑤ 따돌림      ( ) ⑥ 절도      ( ) ⑦ 환각물질 흡입 및 복용  
( ) ⑧ 유해업소출입      ( ) ⑨ 가출

15. 귀 학교에서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는 폭력행위가 발생하는 장소를 학교 안과 학교 밖으로 구분할 때 그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 ( ) ① 학교 안에서 발생한 행위가 거의 전부이다.  
( ) ② 학교 안에서 발생한 행위가 많다.  
( ) ③ 학교 안과 학교 밖에서 일어난 행위가 거의 반반이다.  
( ) ④ 학교 밖에서 발생한 행위가 많다.  
( ) ⑤ 학교 밖에서 발생한 행위가 거의 전부이다.



16. 사회봉사 징계를 받은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 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 ( ) ① 하고 있다.      ( ) ② 그저 그렇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하고 있지 않다.

17.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은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특별교육과정을 이수시키고 있습니까?

- ( ) ① 적극적으로 그렇다.  
( ) ② 비교적 그런 편이다.  
( ) ③ 그저 그렇다.  
( ) ④ 그렇지 못하고 있다.

18. 퇴학처분의 징계에 해당되는 학생은 퇴학처분 전에 다른 학교 또는  
직업훈련 교육기관, 대안학교, 산업체학교 등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 ( ) ① 적극적으로 그렇다.
- ( ) ② 비교적 그런 편이다.
- ( ) ③ 그저 그렇다.
- ( ) ④ 알려주지 않는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학생 체벌에 관한 규정(예시)

##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서 명시한“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여”행하여지는 학생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체벌”이라 함은 학교장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락을 받은 교사가 훈육의 목적을 가지고 훈육대상의 학생에게 일정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 2.“정당봉”이라 함은 학생의 신체 부위에 직접적으로 체벌을 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회초리를 말한다.
- 3.“기합”이라 함은 학생을 체벌하기 위하여 간접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벌주기를 말한다.

제 3 조(체벌의 원칙) 학생을 체벌하기 위하여 행하는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교육상불가피한 때에는 학생에게 정당봉 또는 기합으로 신체적 고통을 가할 수 있다.

제 4 조 (체벌시행의 목적) 체벌은 학생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 학생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적인 고통을 가하여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고 스스로 반성하게 하여 교육적인 효과를 높이도록 함에 목적을 둔다.

제 5 조(체벌시행의 3원칙) 학생에게 체벌을 할 때는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1.“사전고시의 원칙” : 어떤 경우에 체벌이 가해지는가를 학생·학부모에게 사전에 충분히 주지시켜야 한다.
2. “사후통고의 원칙” :체벌을 가한 뒤에 그 사실을 교장·교감·학부모에게 통고해야 한다.
- 3.“협의·평가의 원칙” : 체벌에 대한 일반 원칙을 모든 교사가 지킴으로써 사전연수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모든 교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 조 (체벌의 3가지 방법) 학생에게 체벌을 할 때는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1.“부위 선정의 적정성” : 작은 충격이나 고통으로도 신체에 위험을 주는 부위를 피하여야 한다.
- 2.“간접 전달의 방법 적용” :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찰 경우 격한 감정이 직접 전달되어 본의 아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학생의 반감을 유발하기 쉬우므로 반드시 정당봉을 사용하거나 기합을 주어 간접적으로 전달하도록 한다.
- 3.“동의 확인” : 피체벌 학생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거나 공동체 생활의 규정 등을 어긴 사실에 대하여 인식한 것을 확인한 후, 피체벌 학생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 7 조(사전확인)

- ① 체벌을 시행하는 교사는 체벌의 직전에 학생의 신체적·정신적·생리적 이상(질병 등)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체벌을 중지하여야 한다.
- ② 교사는 체벌전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체벌 수용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묻고 체벌을 수용한다는 명백한 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에만 행한다. 만일, 당해 학생 또는 학부모가 체벌을 거부하고 그에 상

용하는 다른 대안 조치를 원할 때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③ 제 2항의 체벌에 상응하는 대안 조치는 다음 각 호의 1로 한다.

1. 생활지도 평점상의 불이익
2.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
3. 반성문 쓰기
4. 특별교육 이수
5. 재택 학습

※기타 가능한 항목 삽입

제 8 조 (구두허락) 학생에게 체벌을 가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허락을 얻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체벌 후 보고를 할 수 있다.

제 9 조 (체벌자) 체벌은 학교장 또는 학교장의 허락을 받은 교육경력 3년 이상의 교사가 행한다. 다만, 학생부로 이관되었을 때에는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학생부 교사가 행하며 여학생에 대한 체벌은 여교사 또는 교육경력 10년 이상의 교사가 행할 수 있다.

제 10 조 (전체 체벌 금지) 체벌의 대상이 되는 특정 학생이 불분명하거나 집단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집단 체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1 조 (체벌장소) 체벌을 할 경우 체벌 현장이 다른 학생에게 노출되는 장소에서는 아니 된다.

제 12 조 (체벌의 제한) ① 체벌은 정당봉 또는 기합에 의하여 그 대상자에게만 최후의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외의 방법은 허용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이유만으로 체벌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험점수가 성취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
2.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경우
3. 정서불안으로 항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경우

※기타 필요한 항목 삽입

제 13 조 (규정준수의 의무) 학생에게 체벌을 가하고자 할 때에는 이 규정

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4 조 (벌칙) 이 규정을 어기고 자의적인 체벌을 가했을 때에는 학교장은 해당 교사에 대하여 학교장 경고 등 자체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5 조 (즉시 보고) 학교장은 학생체벌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장 기합에 의한 체벌

제 16 조(징계의 단계) 학생 징계는 기합, 정당봉에 의한 체벌,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처분 등의 단계로 행해지나 사안의 정황과 교육적 효과에 따라 그 단계를 달리 할 수 있다.

제 17 조 (기합) 기합에 의한 체벌은 정당봉에 의한 체벌의 전 단계 징계로 행한다. 다만, 피체벌 학생의 특성, 사안의 정황,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징계의 단계를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제 18 조 (기합의 종류) 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손바닥, 팔 및 몸을 펴고 땅에 엎드려 있기
2. 양팔을 땅과 수평으로 들고 서 있기
3. 무릎을 꿇고 앉아 있기
4. 무릎을 꿇고 앉아서 손을 높이 들고 있기
5. 앉아서 걷기
6. 일정한 거리를 뛰기

※기타 학교별 항목 삽입이 가능하나 규정된 항목보다 강도가 낮은 것이라야 하며, 화장실 청소 등은 집단 따돌림의 원인이 될 수 있고 3D업종 기피의 교육이 될 수도 있으므로 항목에 삽입하지 않



도록 한다.

제 19 조(기합 강도의 제한) 기합은 학교 급별 학생의 발달단계, 개인별 체력 성별 등을 고려하여 무리가 가지 않은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남교사가 양장치마 입은 여학생을 엮드려 있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 20 조 (기합에 의한 체벌을 가해야 할 경우) 기합에 의한 체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행한다.

1. 생활태도가 불성실하여 교사가 훈계를 하였으나 이를 반복하여 2회 이상 어겼을 경우
2. 남의 자유, 권리, 소유물품을 침해하여 타인을 괴롭히는 경미한 사례가 2회 이상 반복 될 경우
3. 남에게 경미한 폭력, 폭언, 협박, 공갈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나 그 정도가 약할 경우
4. 수업 중 교사의 개인적 훈계를 이유 없이 2회 이상 어겼을 경우
5. 기타 기합에 의한 체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21 조(기합의 제한) 기합에 의한 징계를 할 경우 학생에게 장시간(1시간이상) 무리를 주어 학생의 신체 또는 정신에 부작용이 일어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제 3 장 정당봉에 의한 체벌

제 22 조 (정당봉의 적용 단계) 정당봉에 의한 체벌은 개인의 특성, 사안의 정황 교육효과를 고려하여 징계의 단계를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제 23 조 (정당봉의 재질, 형태 및 크기)

- ① 정당봉은 나무로 된 재질을 사용한다.

② 정당봉의 형태는 지휘봉의 형태로 한다.

③ 정당봉의 크기는 길이50cm이하, 지름1.5cm미만의 것으로 하되, 표면 매끄러워야 한다.

제 24 조(정당봉에 의한 체벌을 가해야 할 경우) 정당봉에 의한 체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행한다.

1. 학습태도가 불성실·태만하여 교사의 반복적인 지도에도 전혀 변화가 없을 경우
2.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인격 또는 물품 등에 손해·손상을 입히는 사례가 2회 이상 반복될 경우
3. 음주·흡연·약물 오남용으로 학생으로서 자신의 정신과 육체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할 경우
4. 흥기 등으로 자신이나 남의 신체에 소남을 입힐 경우
5. 타인을 협박, 공갈, 위협하는 언어적 폭력으로 남에게 정신적 피해 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할 경우
6. 남을 위협하거나 해칠 목적으로 흥기 등을 소지하는 경우
7. 교사 중 부정행위를 할 경우
8. 교내·외에서 싸움 등으로 불미스런 행위를 할 경우
9. 다른 학생을 2회 이상 반복하여 괴롭히는 경우
10. 교사의 개인적인 훈계 내용을 이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어길 경우
11. 기타 정당봉에 의한 체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경우는 학교별로 필요한 항목 삽입

제 25 조(횡수의 제한)

① 정당봉에 의한 체벌을 할 경우 하나의 사안에 대하여 5회를 넘지 못한다.

② 사안별 정당봉 사용횟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기타 경우는 학교별로 필요한 항목 삽입

(예시)

1. 학교생활이 불성실하여 2회 이상의 주의를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을 경우
2. 담배를 소지하여 교사의 지도를 받고서도 재차 소지한 경우 4대
3. 점심시간에 월담을 하여 교외에 나간 경우 5대
4. 다른 학생을 2회 이상 반복하여 괴롭히는 경우 5대
5. 교내에서 싸움을 하여 불미스런 행위를 한 경우 3대

6.(학교별로 규정)

제 26 조 (정당봉을 대는 부위)

- ① 정당봉을 대는 부위는 신체 중 가장 안전한 부위로 한다.
- ② 어떠한 경우에도 머리 부분이나 여학생의 무릎, 둔부 등 민감한 부분에 정당봉을 대어서는 아니 된다.

※남·녀별로 가장 안전한 신체부위를 선택하여 학교별로 규정한다.

제 27 조(정당봉의 비치 장소) 교사는 정당봉 등 체벌로 이용될 수 있는 도구를 휴대하고 다녀서는 아니 되며, 학교는 정당봉을 교무실 등 학생들이 수시로 출입하는 생활공간이 아닌 장소에 비치해 놓는다.

제 28 조 (사전, 사후 처리)

- ① 학교는 체벌의 징계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생활태도가 불량하여 체벌 받을 가능성이 높은 학생이 있을 경우 해당교사는 사전에 체벌 징계가 가해질 수 있음을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예고하여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발휘토록 촉구한다.

- ③ 어떠한 상황에서도 벌을 받는 사안을 가지고 벌받은 학생의 특성을 일반화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체벌의 징계는 일시, 사유, 체벌 받은 학생의 성명·성별·연령, 체벌자, 체벌 방법, 학부모에게 통보 유무를 기록하여야 한다.

##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월일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규정의 제·개정) 이 규정의 제·개정은 체벌규정제정위원회(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의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제 3 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한 체벌징계는 학생선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 4 조(상급생의 체벌 금지) 이 규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상급생이 하급생을 지도하기 위하여 체벌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며, 만약 체벌로 인한 사안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학생선도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